

한국-독일 양자협력회의 귀국보고서

2008.6



통 계 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2008.6.4~6.8(5일간) 기간 중에 개최된 제12차 한·독 통계협력회의에 대한 보고서로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및 회의기간 중 수집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연방통계청의 전략계획
- 한국의 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중기 계획
- 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개선방향
- 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관련 협력체계 구축

금번회의는 방문국이 질의하고 주최국이 답변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양국이 각각 사전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상호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독일 연방통계청의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측에서 발표한 한국통계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독일 연방통계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청 국제협력담당관실과 독일 연방통계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제12차 한독통계협력회의 방문단

목 차

I. 회의 개요	1
1. 회의일시 / 장소	1
2. 대표단	1
3. 회의주제	1
4. 세부일정	2
II. 회의 결과	3
1. 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3
2. 한국의 통계발전계획	8
3. 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개선점	12
4. 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관련 협력체계 구축	15
5. 제13차 한국-독일 양자협력회의 안건	15
〈붙임-1〉 독일 연방통계청 조직도	16
〈붙임-2〉 독일 연방통계청의 전략계획(FIT 2012) 과제목록	17
〈붙임-3〉 지방정부 평가지표 관련 독일 슈테른(Stern) 기사	19
〈붙임-4〉 독일 통계 등록법(1차 해석본)	31
〈붙임-5〉 한독양자협력회의 관련 사진	63
〈붙임-6〉 독일이 보낸 Document	64
〈별첨-1〉 독일측 발표자료	
〈별첨-2〉 한국측 발표자료	
〈별첨-3〉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관련 자료(영문·국문)	
〈별첨-4〉 독일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	

I

회의 개요

1. 회의 일시 / 장소

가. 일시 : '08.6.5(목)~6.6(금), 2일간

나. 장소 :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Hessen주 Wiesbaden시)

2. 대표단

가. 한국측 대표단

- 단장 : 김대기 통계청장
- 단원 : 정규남 통계정책국장, 안정임 국제통계협력관, 하태원 사무관

나. 독일측 대표단

- 단장 : Mr. Walter Radermacher 통계청장
- 단원 : Ms. Angela Schaff 협력과장, Mr. Peter Schmidt 사업체모집단과장, Mr. Dieter Schafer 연구개발과장, Mr. Bernd Stortzbach 국제과장

3. 회의주제

- 가. 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 나. 한국의 통계발전계획
- 다. 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개선점
- 라. 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관련 사항
- 마. 제13차 한국-독일 양자협력회의 안건

4. 세부일정

< 세부 일정표 >

시간	일정	발표/참석자
◇ 2008. 6. 5.(목)		
10:00~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환영사 : 독일 통계청장 · 개회인사 : 한국 통계청장 	Mr. Radermacher
10:3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통계청 소개 	Mr. Stoertzbach
12:00~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찬 	독일청장 주최
13:45~1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OECD세계포럼 의제 논의 · 독일통계청의 중장기 발전방안 · 독일통계청의 2008 업무계획 · 한국 통계시스템의 중기 발전방안 	김대기 통계청장 외 Ms. Koehler Ms. Schaff 독일 통계청장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 만찬 	한국, 독일 대표단
◇ 2008. 6. 6.(금)		
10:00~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사회통계 혁신방안 · 통계 목적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방안 · 2009 한독 양자회의 토의 주제에 관한 의견 교환 · 질의응답 및 토론 	통계정책국장 하태원사무관 Mr. Schaefer Mr. Schmidt Mr. Stoertzbach
13:15~1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과 및 사진촬영 	
16:3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바덴 인근 독일의 경제중심지 프랑크푸르트 방문 	한국대표단,,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찬 	한국, 독일 대표단

II

주요 회의내용

1. 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가. 독일의 통계제도 및 개선노력

□ 독일의 통계제도의 특징

- (통계활동의 법제화) 모든 통계활동은 연방통계법 및 개별 통계의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
- (기능적 집중) 통계작성은 연방통계청과 주정부 통계청에서 주로 담당하는 집중형 통계제도
 - ※ 다만, 연방은행, 연방고용청 등도 일부 통계를 작성
- (지역적 분산) 연방통계청과 州소속의 16개 지방통계청으로 구성
 - 연방통계청은 통계기획 및 공표를 담당하고, 지방통계청은 자료수집 및 가공을 담당
 - 주정부 소속의 지방통계청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협력에 한계
- (통계조정기구) 통계수요반영 및 지방청과의 협력을 위해 위원회 구성
 - 집중형 통계제도에서 원활한 통계수요 반영을 위해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통계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통계청장간 협력회의 운영
- (통계품질관리) UN, EU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 준수

□ 독일 통계청 조직

- **(연방통계청)** 청장, 부청장, **9국, 38과**, 3개 Working Group으로 구성 (붙임1)
 - 연방통계청장은 연방정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
 - **본(Bonn)**과 **베를린(Berlin)**에도 의회 및 각 부처의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무소를 설치
 - 연방통계청 직원은 **2,800** 여명이며, 여성비율이 58.7%
- **(지방통계청)** 주정부에 소속된 **16개** 지방통계청 및 **100개**의 지방사무소가 있음
 - 지방통계청의 인원은 약 **5천여명**이며, 주의 면적 및 인구수에 따라 150명에서 1,200명으로 규모가 다양

□ 독일 연방통계청의 개선노력 : 5개년 전략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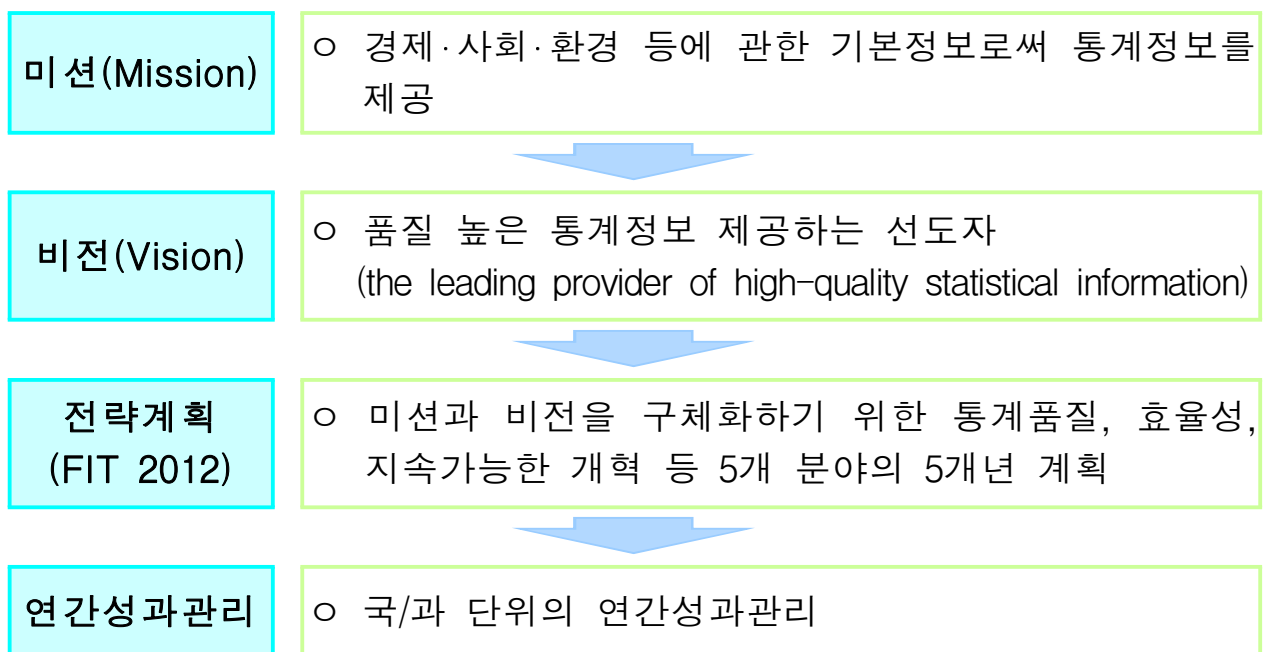
- **(협력강화)** 지방통계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강화
- **(표준화)** 통계작성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계작성절차, 통계 DB 등을 표준화
- **(행정적 통계)** 다른 행정기관의 비용/성과 등을 벤치마킹하여 행정 개선에 활용
- **(응답부담 경감)** 과세자료 및 사업체등록자료 활용, 통계조사 수 축소 등을 통해 응답부담을 완화

나. 독일의 5개년 전략계획

□ 전략계획 개요

- (의의) 연방통계청의 미션 및 비전에 근거하여 수립된 5개년 계획

< 독일 연방통계청 전략계획 및 미션/비전의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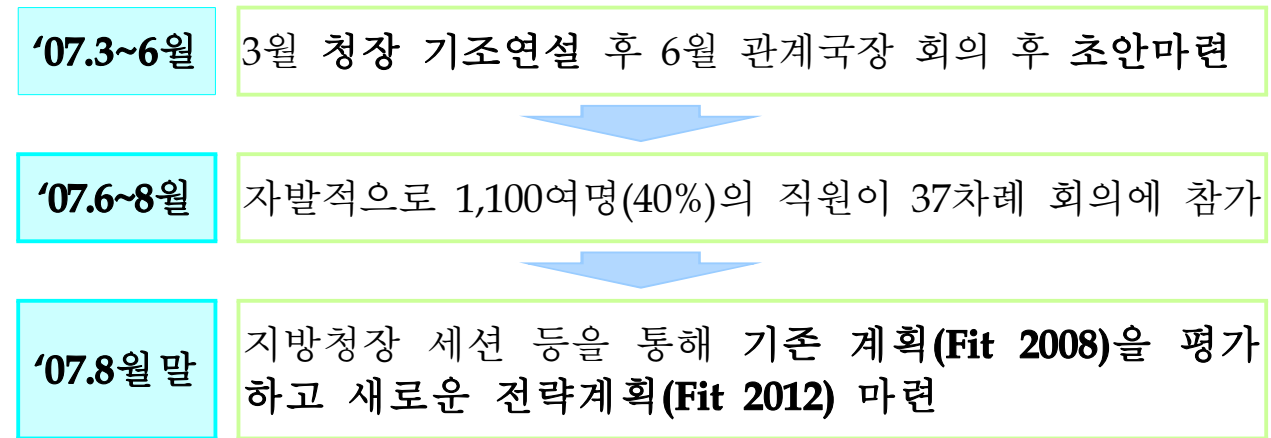


- (연혁) '02년 **FIT 2005** 수립 이후 2차 수정·보완

※ ('02년) FIT 2005 → ('03년) FIT 2008 → ('07년) FIT 2012

- (구성) 5개 주요과제 및 37개 세부과제로 구성
- (활용) FIT 2012를 기반으로 국/과의 연간 성과관리 계약체결

□ 작성절차



□ 주요 내용 : 5개 주요과제 및 37개 세부과제 (붙임2)

- (통계품질관리)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여 통계의 적시성, 정확성, 신뢰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접근성, 투명성을 실현
- (효율성 강화) 통계작성과정의 최적화·표준화, 온라인 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통계작성의 효율성 강화
- (구조적 개혁) 통계공표 및 비밀보호 등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고객 및 주통계청의 의견을 수렴
- (대외협력강화) 국내 통계관련자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Eurostat 등 국제통계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
- (Fit 2012) Fit 2012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직원, 간부, 통계청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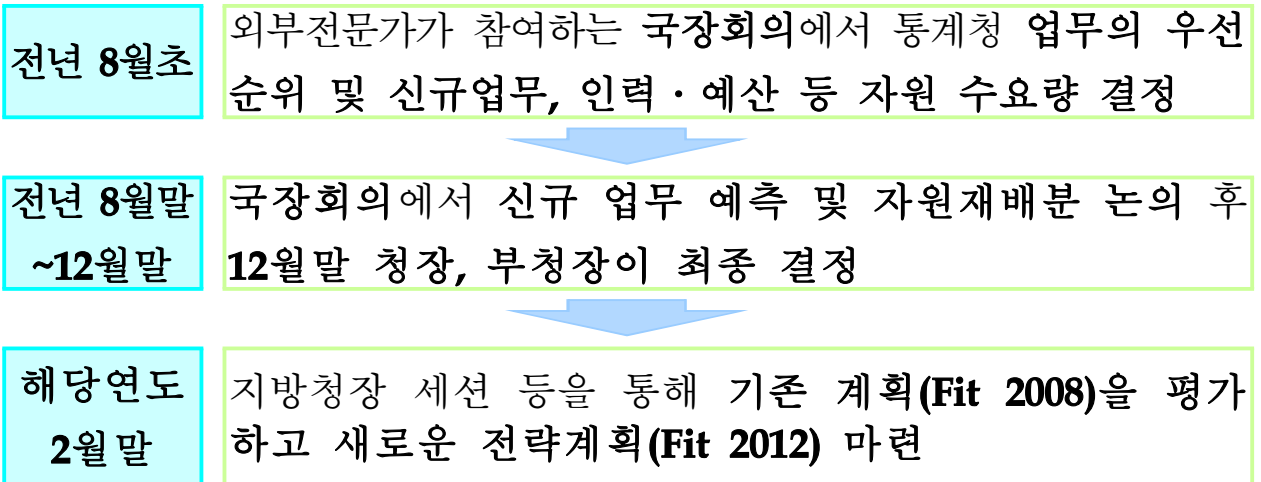
다. 독일의 연간 성과관리

□ 연간 성과관리 개요

- (의의) 조직비전, 전략계획(Fit 2012)의 하부계획이며 국·과장 성과계약 및 국별 인력·예산 배분의 기준

- TQM(Total Quality Management) 기법을 연방 통계청에 적용

□ 작성 절차



□ 주요 내용

- (성과계약서) 국별 기존 업무 및 신규 업무, 필요자원, 소요기간 등을 성과계약서에 명시

- 부록에는 전략계획(Fit 2012) 및 국별 업무 평가지표, 업무목록, 예산 및 인력 절감계획, 신규 업무에 대한 인력수요 기재

□ 집행 및 통제

- 분기별로 성과 및 예산 지출 등을 보고

2. 한국의 통계발전계획

가. 중기통계발전 계획

□ 한국의 현 상황

- (선진화단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위협요인이 상존

◇ 우리나라의 위협요인

- (인구변화) 출생률 저하로 인해 총인구 감소 예상, 급속한 인구 노령화,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 등으로 경제 활력 저하 우려
- (경제·사회변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부담 가능성, 남북통일시 통일비용 부담

□ 통계발전계획

- (의의)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통계를 작성·보급하기 위한 통계전반의 발전 계획으로 4개 분야로 구성
- (통계 개발·개선)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개발·개선
 - 지니계수 개선* 및 실업률 보조지표 확충, 자치단체 평가지표 개발
 - ※ 지니계수 : 2인이상 가구, 총소득기준 → 1인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신규 패널조사 개발 및 현재의 중복 패널조사 정비
 - 통계와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통계기반정책관리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 **(효율성 강화)** 중복통계 또는 활용도가 낮은 통계는 통폐합
 - 또한 통계작성 시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예산 및 응답부담을 경감
- **(정확성 향상)** 국가통계작성 과정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
 - 현장조사 조직이 취약한 타부처의 조사통계(Survey)를 통계청이 대행하여 실시
- **(접근성 제고)** 통계이용자가 손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제공시스템을 구축
 - 국가통계통합DB, e-나라지표,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 독일측 의견

- **(실업률 관련)** 독일에서도 연방고용청 기준, 지방정부 실업신고 기준, ILO 기준 등 실업률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ILO 기준이 필요하나, 실업정책을 위해서는 연방고용청 또는 지방정부 실업신고 기준이 적합
- **(지방정부 평가지표 관련)** 독일에서도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공감
 - 일부 언론사(Stern지)는 지자체 평가 기사를 보도하기도 함(붙임3)
 - 독일 연방통계청은 우리의 GIS시스템처럼 지방정부별로 세부 통계지표를 서비스하려는 계획

나. 사회통계발전계획

□ 한국의 사회통계 및 사회상

- (사회통계) 사회분야 통계는 **360종**(‘08.6월)으로 국가통계의 **34%**

◇ 우리나라의 사회상

- (강점) 고등교육 진학률은 높아 인적 자원의 질이 뛰어나고 IT 산업 발전으로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적인 수준
- (문제점) 출생률 및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제 역동성 저하 우려

□ 사회통계발전계획

- (의의) 사회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 등 13개 부처 합동으로 사회통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
 - ‘11년까지 **91종**의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82종**의 통계를 개선
- (소득분배지수 개선) 지니계수 작성기준을 2인 이상 가구, 총소득에서 1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으로 변경
- (고용보조 지표 확충) 공식실업률 지표 이외에 다양한 보조지표를 확충하여 고용정책에 활용
- (행복지수 개발) GDP 등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외에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

- (시군구별 **GRDP**) 16개 시도별로 작성되는 GRDP 통계를 230개 시군구별로 세분화
- (특성집단별 통계) 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우, 외국인 등에 대한 통계지표를 개발·개선

□ 독일측 의견

- (행복지수 관련) 독일도 경제·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삶의 질’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주관적 지표인 행복지수 작성에는 신중한 접근 피력
 -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in Germany)을 주제로 28개 세부지표를 선정 (별첨)
- (시군구별 **GRDP**) 230개 시군구별로 통계를 세분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역정책을 위해 바람직한 시도로 보이나
 - 세부지역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본수 확대, 통계응답 부담, 예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외국인 통계) 독일도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시행
 - 문화적 이질감, 차별대우 등으로 민족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통합정책을 위한 외국인 통계 작성에 공감
 - UN유럽 통계기관장회의*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를 다룰 예정

* UN유럽통계기관장 회의('08.6.10~6.12)

: 한국통계청에서는 박경애 인구동향과장, 김철주 사무관 참가

3. 양국의 행정자료 활용

가. 한국의 행정자료 활용

□ 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및 한계점

- **(활용현황)** 통계청 통계 65종 중에서 현재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통계는 **16종**이며, 그 중 **5종**은 일부 항목을 대체 중
- **(한계점)** 항목대체 목적의 활용도가 낮아서 실제 예산이나 응답 부담 경감 등 **계량적 효과는 미미**

□ 행정자료 활용 확대 노력

- **(법적근거 마련)**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계법 제**24조**에 신설
- **(활용가능성 조사)** '08.2월 통계청 통계를 대상으로 행정자료 활용가능성을 조사
 - 65종 중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15종**이며, 이 중 **7종** 통계는 일부항목을 대체 가능
- **(계량적 접근)** 행정자료 활용시의 예산 및 응답부담 경감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행정자료 활용 필요성 제기
- **(비밀보호조치)**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보호를 위해 비밀보호 규정 제정, 보안시스템 구축

나. 독일의 행정자료 활용

□ 행정자료 활용 배경 및 경과

- **(활용배경)** 예산 및 응답부담 경감, 조사환경 악화 등으로 행정자료 활용을 추진
- **(추진경과)** '98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률(붙임4) 마련하고, 인구센서스 및 기업대상 통계에 활용

□ 활용 사례

- **(인구센서스)** '87년 최종적으로 조사방식의 인구총조사를 시행하고, 이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로 전환
- **(기업대상 통계)** 과세자료, 고용자료, 상공회의소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체명부 작성 및 통계 작성에 활용
 - 사업체명부 작성에 과세자료, 고용자료, 상공회의소자료 등을 활용
 - 월별 거래액 및 고용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업, 무역업 등에 관한 단기 통계를 작성

□ 활용상 특징

- **(One-way 방식)** 통계청에서 일방적으로 국세청, 연방고용청의 자료를 입수·활용하며,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외부 제공금지
- **(활용비중)** 행정자료의 정확성 등에 따라 행정자료 활용비중을 조정

※ 수공업통계는 행정자료로만 작성하지만, 소매업통계는 여전히 조사방식을 따르며, 운수업통계는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를 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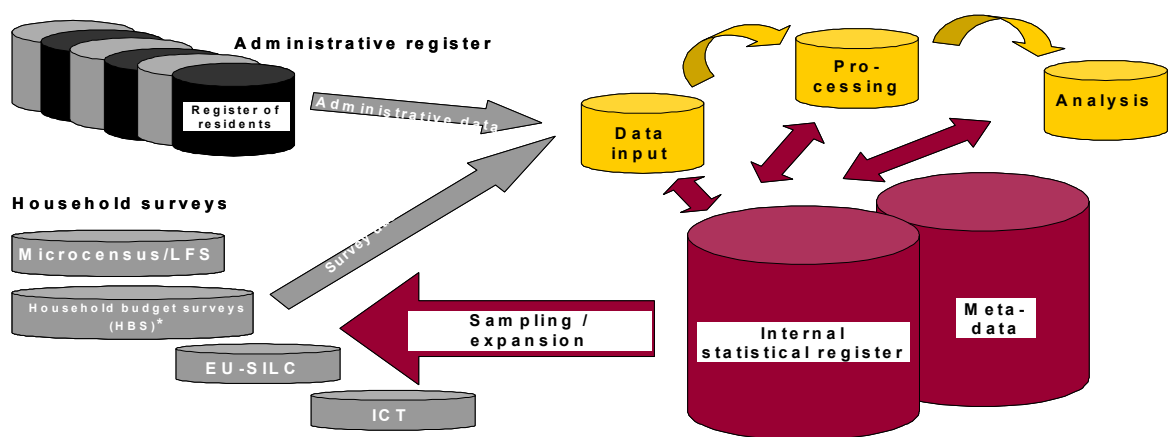
□ 그간의 문제점

- (행정자료의 품질) 일부 행정자료는 결측치가 있거나 과소·과대 응답의 가능성이 있음
- (작성기준 차이) 과세자료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나,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업체 단위 자료가 없을 수 있음
 - 기관마다 사업체에 부여하는 ID가 달라 행정자료 통합에 어려움
- (작성대상 차이) 부가세 자료를 활용시 부가세 면세자의 행정자료는 확보 불가

□ 향후 계획

- (통합메타DB 구축)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통합하여 메타DB를 구축하고 통계작성 순과정에서 활용

< 인구센서스의 통합메타 DB >



- (사업체 ID 통합) 사업체 모집단ID와 과세ID 등을 통합하여 단일의 사업체ID 체계 구축

4. 한국의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관련 사항

□ 기후변화 관련 의제

- (한국측) 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토론할 필요
- (독일측) 시기적절한 주제로 보이며, 독일에서도 전정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09년 제3차 OECD 회의에 독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 독일 연방통계청장 Mr. Walter Radermacher는 현재 UN 환경·경제 위원회(Environment and economic committee) 위원장임

□ 대화형 웹사이트 (Web 2.0) 관련 의제

- (한국측) 온라인 대화형 웹사이트 (Web 2.0) 구축이 향후 사회 발전추진을 위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의제로 선정할 필요
- (독일측) 사회발전문제와 IT 기술을 연결하는 좋은 주제로 보임

□ 포럼전시회 참가

- (한국측) 포럼전시회에 독일 연방통계청이 참여해주기 바람
- (독일측) 통계청장 교체로 인해 차기 통계청장이 결정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가를 고려해 보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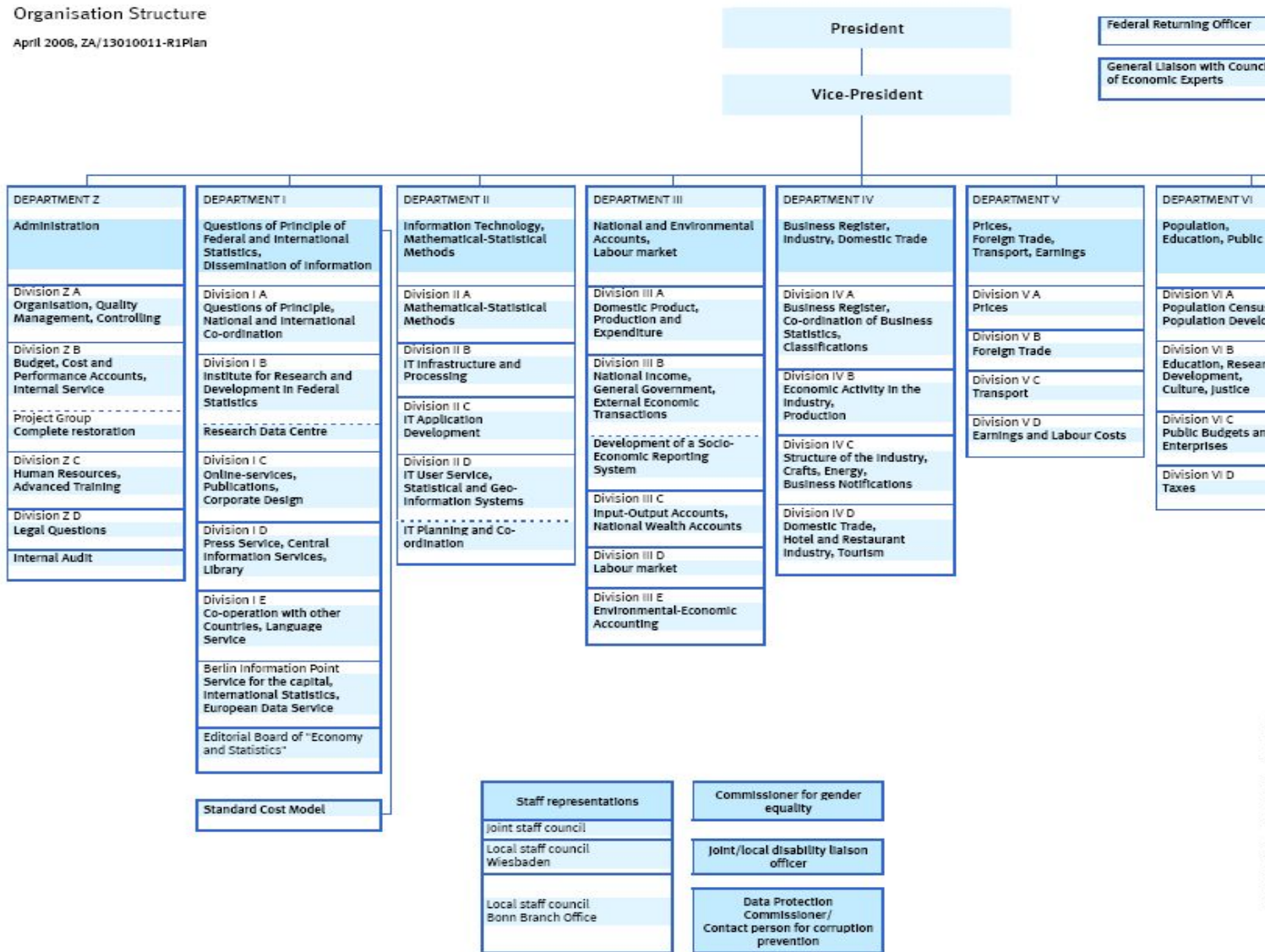
5. 제13차 한국-독일 양자협력회의 안건

- '한국-독일의 사회지표 비교'를 제13차 회의 안건으로 선정

< 부임-1 > 독일 연방통계청 조직도 (9국 38과)

Organisation Structure

April 2006, ZA/13010011-R1Plan



〈 붙임-2 〉 독일 연방통계청의 전략계획(FIT 2012) 과제목록

주요 과제	세부 과제
<p>1. 통계품질향상 (We produce quality produc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치적 중립성 ② 신규 통계작성의 적시성 ③ 통계의 정확성 ④ 통계작성 방법 및 개념의 일관성 ⑤ 국내 및 국제 자료와의 비교가능성 ⑥ 통계에 대한 접근성 ⑦ 통계작성과정의 투명성 ⑧ 품질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
<p>2. 효율성 강화 (We work efficient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은 개념 및 기술적 표준 사용 ② 최신 정보기술에 기반한 통계작성 및 서비스 ③ 공식통계의 응답부담 경감 ④ 온라인 조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⑤ 1차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 ⑥ 유사 업무 통합 및 절차 표준화 ⑦ 성과지표 및 감사를 절차 점검에 활용 ⑧ 행정관리 및 절차통제로 비용절감 유도
<p>3. 구조적 개혁 (We address structural refor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공표 절차의 공정성 강화 ② 고객 의견을 통계 및 업무계획에 반영 ③ 비밀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자료 활용 ④ 다양한 자료원을 통계시스템에 통합 ⑤ 주(州) 통계청과 함께 연방통계제도 현대화 ⑥ 방법론 및 분석기법 강화

주요 과제	세부 과제
<p>4. 대외협력강화 (We are a strong partn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정보제공자로서의 통계청 ② 공식 통계제도의 관계자에 대한 신뢰 유지 ③ 과학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 ④ 유럽통계시스템구축의 핵심적인 역할 ⑤ 유럽통계시스템에서 선도적인 통계기관의 위상 ⑥ 유럽통계지침(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 준수 ⑦ 국제통계시스템 발전의 중요한 역할 수행
<p>5. Fit 2012 (We are prepared for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② 변화 및 발전 프로세스 구축시 적극적 참여 ③ 변화에 대한 유연성 ④ 의사소통 및 협력 강화 ◇ 대상: 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리더십 발전 노력 ⑥ 변화단계에서의 소속 직원 지원 및 동기부여 ◇ 대상: 통계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 ⑧ 국내외 요구수준에 따른 소속직원의 수 및 질적 수준 관리

< 붙임-3 > 지방정부 평가지표 관련 독일 슈테른(Stern) 기사

독일의 미래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① 프라이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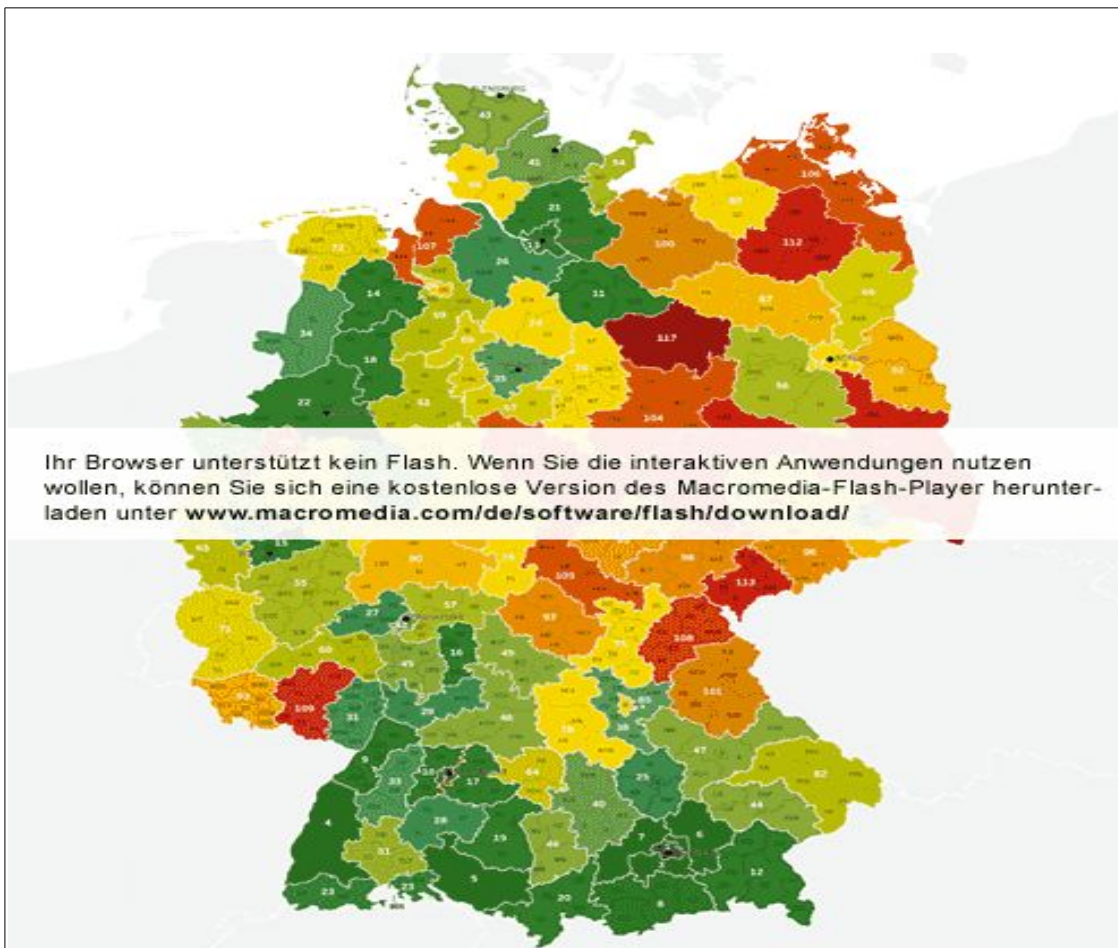
독일의 전망에 관한 대규모 정치사회분야 여론 조사는 다음을 입증한다. 독일 전체가 잘 굴러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50만 명 이상의 독일국민들이 독일의 전망을 위해 같이 힘썼고 차별화된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옛 도시를 향하여 서부지역 프라이부르크(Freiburgs) 부근을 운전해 본 사람은, 안테나, 위성접시, 태양광집열판으로 치장된 특이한 지붕구조의 사무실 건물들을 보며 의아해한다. 창문 뒤로는 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그리고 회사 로고가 깜빡이는 곳에는 협회와 대학의 이름이 뚜렷하게 표시되어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산업 도시가 아닌 학문의 도시인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다섯 곳의 프라운 호퍼 연구소와 두 곳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11개의 전공학과와 2만 4천명의 학생들이 있는 대학교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대학병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외에 생명공학 연구회사의 창립센터가 생겨나고 있다. 이곳에서 독일은 이미 미래에 와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라이부르크의 중심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옛 도시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 즉, 역사적 도시 중심지나 그림같이 멋진 골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돌이 깔려진 '개천'은 거리들을 경유하여 슈바르츠발트 상류에서 드라이잠 하천 하류로 유유히 흘러간다.

프라이부르크의 목가적인 전원생활과 하이 테크놀로지가 융화된 도시환경이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을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만든다. 독일의 전망에 관한 대규모 정치사회분야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독일의 전망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답하였으며, 특히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슈바르츠발트 지역이 가장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프라이부르크와 남부 오버라인 지역은 독일의 성공한 지역 사례로 꼽힌다.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의지하고 그 곳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 이는 독일에서 더 이상 자명한 현상만은 아니다. 오늘날 이미 많은 도시와 지역 공동체들이 주민들을 떠나보냈다. 따라서 독일의 전망에 관한 네 번째 설문조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역의 미래 가능성이었다. 긍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인가? 어느 지역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장차 가장 성공적인 독일 사람들은 어디에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어떤 요인이 각각의 지역을 승자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인가?



진녹색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의미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향후 5년-10년 동안 양질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주지역의 미래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응답자는 1등급(매우 그럴다)-6등급(전혀 그럴지 않다)로 답변하였다.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백분율에 따라 진녹색(최상의 평가)-진적색(최하의 평가)으로 구분하였다. 즉, 녹색이 진할수록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높은 것이며 적색이 진할수록 전망치가 낮은 것이다.

※ 州 위의 숫자는 순위를 의미

백만 명 이상의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독일의 밝은 전망을 이끌 기업으로서 맥킨지 컨설팅사, ZDF 방송사, AOL 온라인 포털을 꼽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은 어떠한지를 매우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자신들의 지역이나 주거도시의 미래성에 관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다.

미래성을 점치는 데 있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는 매력적인 일자리 공급, 높은 자유가치,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및 탁아시설 제공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 능력 있는 행정, 과학기술과 하이 테크놀로지를 갖춘 입지 조건과 안전감은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지역의 미래성 전망에 대해 선두그룹에 포함되고자 하는 지역은 전체분야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며, 특별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강점으로부터 미래성을 위한 성공 레시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뮌헨, 라이프치히, 뤼네부르크, 남부오버라인과 프라이부르크 지역 네개 도시 등이 그 후보에 포함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자랑할 만한 특별한 강점은 경제와 과학의 네트워크이다. “우리는 연구 분야의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고 요아힘 루터 씨는 말한다. 루터 씨는 도시내 가장 큰 연구기관 중 하나인 420명의 연구원이 속한 태양에너지 시스템개발 프라운호퍼 연구소 (ISE)를 이끌고 있다. 여기서는 효율적인 태양열 모듈과 새로운 형태의 연료전지를 연구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연구를 산업화하는 것에 있다.”고 루터 소장은 밝힌다. 따라서 태양열 기술로 무장된 신축건물의 지하에서 완벽한 태양 전지가 제조된다. “당장 전력공급이 멈추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산품을 최적화할 수 있다”. 최근 이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수가 연간 약 10% 증가하는 몇 개의 태양열회사들이 생겼다.

많은 연구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 또한 밤에도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 구 도심의 술집에서 만나 서로 와인 잔을 기울이며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곤 한다. “이러한 것은 학문 기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루터 ISE 연구소 소장은 피력한다.

프라이부르크는 전후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가난한 도시 중 하나로서 오늘날에도 모든 연구를 장려할 만한 돈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학문은 가장 우선시 된다. “빠른 허가절차, 연구소 부지 우선 배정, 연구소와 시청간의 긴밀한 교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는 적극 협력한다.”라고 프라이부르크 경제장려담당 베른트 달만은 말한다. “우리는 학문과 관련된 일자리를 원한다. 우리는 규모가 큰 산업의 이주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바덴 뷔르템부르크(BW) 주에서 2월 실직률이 8% 이하라는 것은 성공적인 것이다.

② 뮌헨

뮌헨(München)도 실업자 문제가 조금 있다. 3월에 7.6%에 달했다. “뮌헨은 다양한 사람들과 산업들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크리스티안 우데 시장(사민당)이 설명한다. “미디어, 관광, 보험, 수공업, 이러한 것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알프스에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뮌헨사람들의 8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데 시장(사민당)은 “나에게 뮌헨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솔직하게 밝힌다.

훌륭한 인프라구조와 문화적 유산은 많은 우수인력에게 매력적이다. 뮌헨사람들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 우데 뮌헨시장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비록 전체 독일 도시중 전일제 학교, 탁아시설, 유치원 분야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데 시장의 업무 능력은 좋게 평가된다. “우리가 연방 주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낙후되어있다 하더라도 바이에른 주 내에서는 일등입니다.”라고 우데 시장은 설명한다. 뮌헨은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출산 과잉이다.

③ 라이프치히

뮌헨과 달리 라이프치히(Leipzig)는 좀 더 낙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대도시 주민들의 낙천주의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 “미래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에서 24위를 차지했다. 라이프치히는 20세기 초반 대도시중에서 4등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부강한 도시중 하나였고 쾰른이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서독 대도시들도 제쳤다. “만족”이란 테마에서도 라이프치히는 상위에 올랐다. 라이프치히는 동독의 등대인가?

“우리는 등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 전 지역을 끄는 전차입니다.”라고 볼프강 티펜제 라이프치히 시장(사민당)은 말한다. 그는 최근 67.1%의 지지율로 재선되었다.

티펜제 시장과 함께 라이프치히 거리를 걸어본 사람은 마치 대규모 건축공사장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공기에서는 시멘트 맛이 나고, 건설기기 소음은 대화를 방해한다. 티펜제 시장은 모든 건축 공사장을 알며 노동자들 역시 그를 알아본다. 그는 달리는 전차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티펜제 시장의 비호 속에 쿠벨레, 포르쉐, 베엠베 같은 대기업이 이곳으로 왔으며, 최근에는 수십억의 투자를 하며 우체국이 라이프치히로 왔다. 이로서 수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④ 뤼네베르크

뤼네베르크(Lüneburg) 역시 독일의 가장 막강하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다. 중세 때 첫 한자동맹 상인들이 이 도시에서 채취한 소금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붐이 일단락되자 뤼네베르크는 점차 쇠락한 도시가 되어갔다. 戰後에 북부독일의 소도시는 1,350개의 동상과 옛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심을 다시 찾았다. 지방군, 연방군, 연방 국경보호대가 주로 거주하였다. 전환기를 계기로 이러한 특수경기 역시 끝이 났다. 수천명의 거주자가 이주해 나가고 대형산업이 없는 농촌 지역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대답은? '밝다'는 것이다. 뤼네베르크는 독일의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주민들의 시각에서도 동의되는 성공방식은 삶의 질이다. 많은 자원이 확보된 동독과의 희망없는 전투에 값비싼 경제지원을 하기보다는 뤼네베르크는 문화와 교육에 힘을 쏟는다.

그래서 7만명이 거주하는 이 작은 도시는 3개 분야의 독일 공연을 개최한다. 즉, 천만 유로 예산은 정기적으로 영화, 발레 그리고 연간 2회의 오페라 공연을 가능하게 한다. 6개의 박물관, 도시 축제와 고전적으로 고쳐진 오래된 도시가 있다. 최근 백 만 유로를 들여 만 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지어졌던 종합대학교에 병영지에 있던 단과대학이 이전하였다. 유치원 수가 전환기 이후로 거의 세 배가 늘어났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과가 있었다. 뤼네베르크가 설문조사에서만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로 똬 뚫어놓은 보람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뤼네베르크시와 구역의 거주자 수는 12만 3천 명에서 17만 3천명으로 증가했다. 약 40%의 증가율이다. 이주를 인한 인구 감소는 이로서 충분히 보상되었다. 조세수입 역시 증가되어 울리히 맥데 (사민당)시장은 작년에 막대한 문화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예산잉여금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것이 전환점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증가하는 학생 수로 인하여 향후 4년 동안 약 4천 5백만 유로를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an Boris Wintzenburg (얀 보리스 빈첸부르크)

19/2005권 슈테른紙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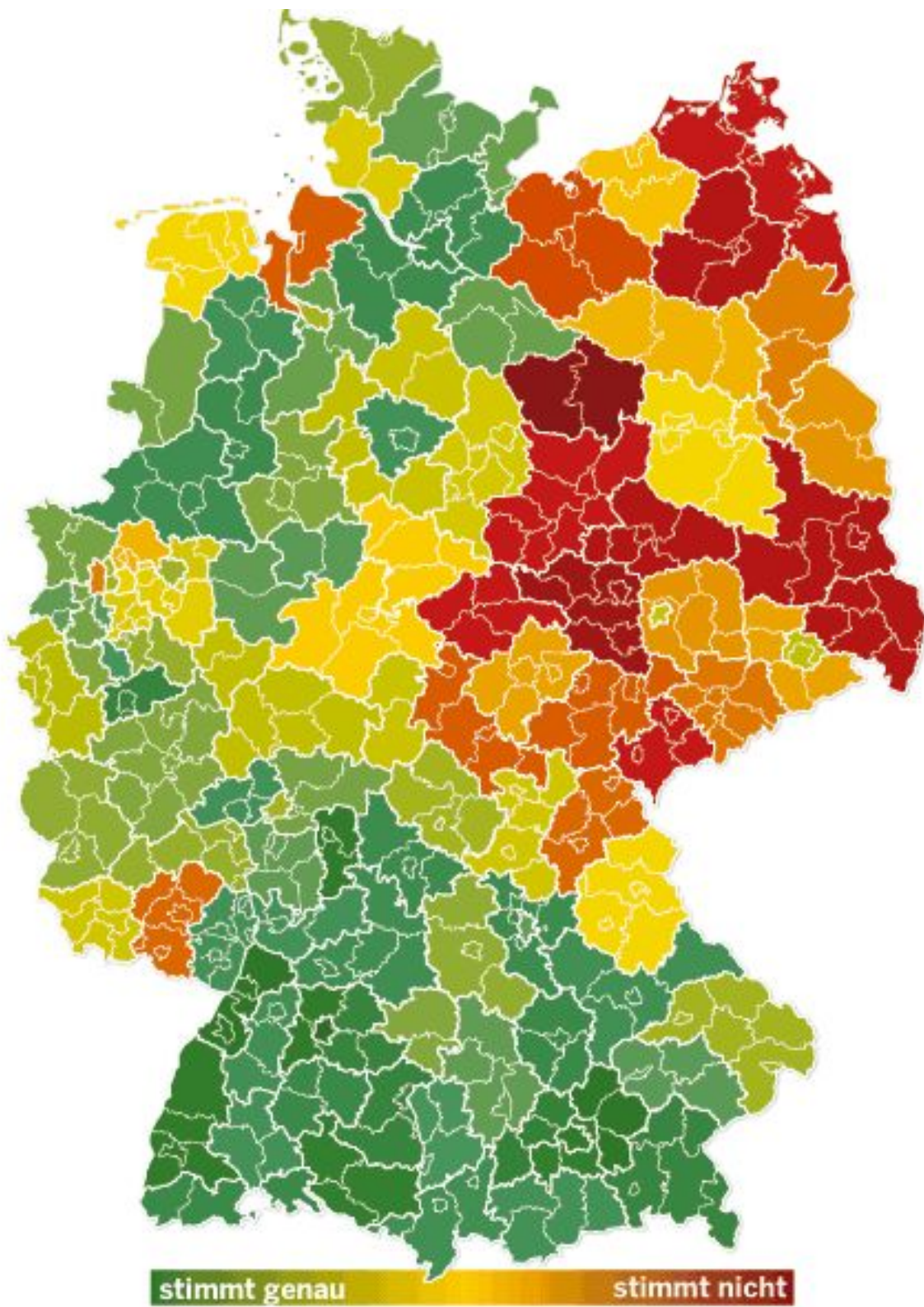
(http://www.stern.de/politik/perspektivedeutschland/:Perspektive-Deutschland-Wo-Deutschland-Zukunft/539979.html?nv=ct_cb&eid=501574)

<참고1>

'삶의 질'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117개 州)

Rang	Region	Prozent	Rang	Region	Prozent
1	Stuttgart	84,6	61	Rhein Hessen-Nahe	70,2
2	Mittlerer Oberrhein	82,7	62	Schleswig-H. Nordwest	70,2
3	Ebersb./Erding/Freising	82,7	63	Dortmund	69,9
4	Bayerischer Untermain	82,4	64	Oberhausen/Mülheim	69,7
5	München	82,2	65	Donau-Wald	69,5
6	Ludwigsburg/Böblingen	81,8	66	Main-Rhön	69,4
7	Südlicher Oberrhein	81,6	67	Bremen	69,2
8	Bodensee-Oberschwaben	81,3	68	Frankfurt	69,1
9	Starnberg/Lk. München	81,2	69	Aachen	68,0
10	München nordw. Umland	80,5	70	Dresden	67,7
11	Donau-Iller (BW)	80,1	71	Siegen	67,6
12	Bonn	80,1	72	Mittelhessen	67,4
13	Stuttgart östl. Umland	80,0	73	Schaumburg/Nienburg	67,4
14	Südostoberbayern	79,7	74	Leipzig	67,0
15	Hamburg	78,8	75	Osthessen	66,7
16	Ingolstadt	78,7	76	Hildesheim	66,7
17	Neckar-Alb	78,6	77	Südheide	66,6
18	Hochrhein-Bodensee	78,3	78	Saar	66,4
19	Würzburg	77,9	79	Oberfranken-West	66,2
20	Hamburg-Umland-Süd	77,7	80	Braunschweig	66,0
21	Industrier. Mittelfranken	77,7	81	Hamm	65,9
22	Osnabrück	77,6	82	Wuppertal	65,3
23	Schleswig-Holstein Süd	77,4	83	Schleswig-H. Südwest	65,2
24	Münster	77,2	84	Bochum/Hagen	64,8
25	Franken	77,2	85	Essen	64,3
26	Regensburg	76,9	86	Ostfriesland	63,5
27	Allgäu	76,9	87	Oberpfalz-Nord	63,3
28	Nordschwarzwald	76,7	88	Havelland-Fläming	62,9
29	Wiesbaden/Taunus	76,6	89	Göttingen	60,6
30	Rheinpfalz	76,4	90	Nordhessen	60,5
31	Oberland	76,3	91	Mittl. Meckl./Rostock	59,6
32	Unterer Neckar	76,2	92	Berlin	58,8
33	Oldenburg	76,1	93	Emscher-Lippe	58,6
34	Schw.-Baar-Heuberg	76,1	94	Prignitz-Oberhavel	58,6
35	Hannover Stadt	75,9	95	Ob. Elbtal/Osterzgebirge	57,4
36	Köln	75,3	96	Mittelthüringen	57,2
37	Donau-Iller (BY)	75,2	97	Oderland-Spree	56,4
38	Düsseldorf Stadt	74,3	98	West Sachsen	55,9
39	Landshut	74,0	99	Duisburg Stadt	54,9
40	Paderborn	74,0	100	Uckermark-Barnim	54,8
41	Augsburg	73,6	101	Chemnitz-Erzgebirge	54,5
42	Schleswig-Holstein Mitte	73,6	102	Oberfranken-Ost	53,6
43	Mönchengladb./Viersen	73,6	103	Westpfalz	53,0
44	Arnsberg	73,6	104	Bremerhaven	52,8
45	Nürnberg	73,5	105	Südthüringen	52,5
46	Starkenburg	73,4	106	Ostthüringen	52,3
47	Lüneburg	73,1	107	Westmecklenburg	51,2
48	Bremen-Umland	72,9	108	Südwestsachsen	48,6
49	Schleswig-Holstein Ost	72,8	109	Magdeburg	45,2
50	Krefeld/Neuss	72,6	110	Nordthüringen	44,5
51	Offenbach/Hanau	72,3	111	Vorpommern	44,4
52	Emsland	72,2	112	Oberlausitz-Niederschl.	42,5
53	Niederrhein	72,1	113	Mecklenb. Seenplatte	41,9
54	Erftkreis	71,7	114	Lausitz-Spreewald	41,8
55	Mittelrhein-Westerwald	71,6	115	Dessau	41,4
56	Ostwürttemberg	71,5	116	Halle/Saale	39,2
57	Bielefeld	71,1	117	Altmark	36,5
58	Trier	70,6			
59	Westmittelfranken	70,5			
60	Leverkusen/Berg. Land	70,3			

Infografik: infographic.de/Jan Schwöchow
Quelle: Perspektive 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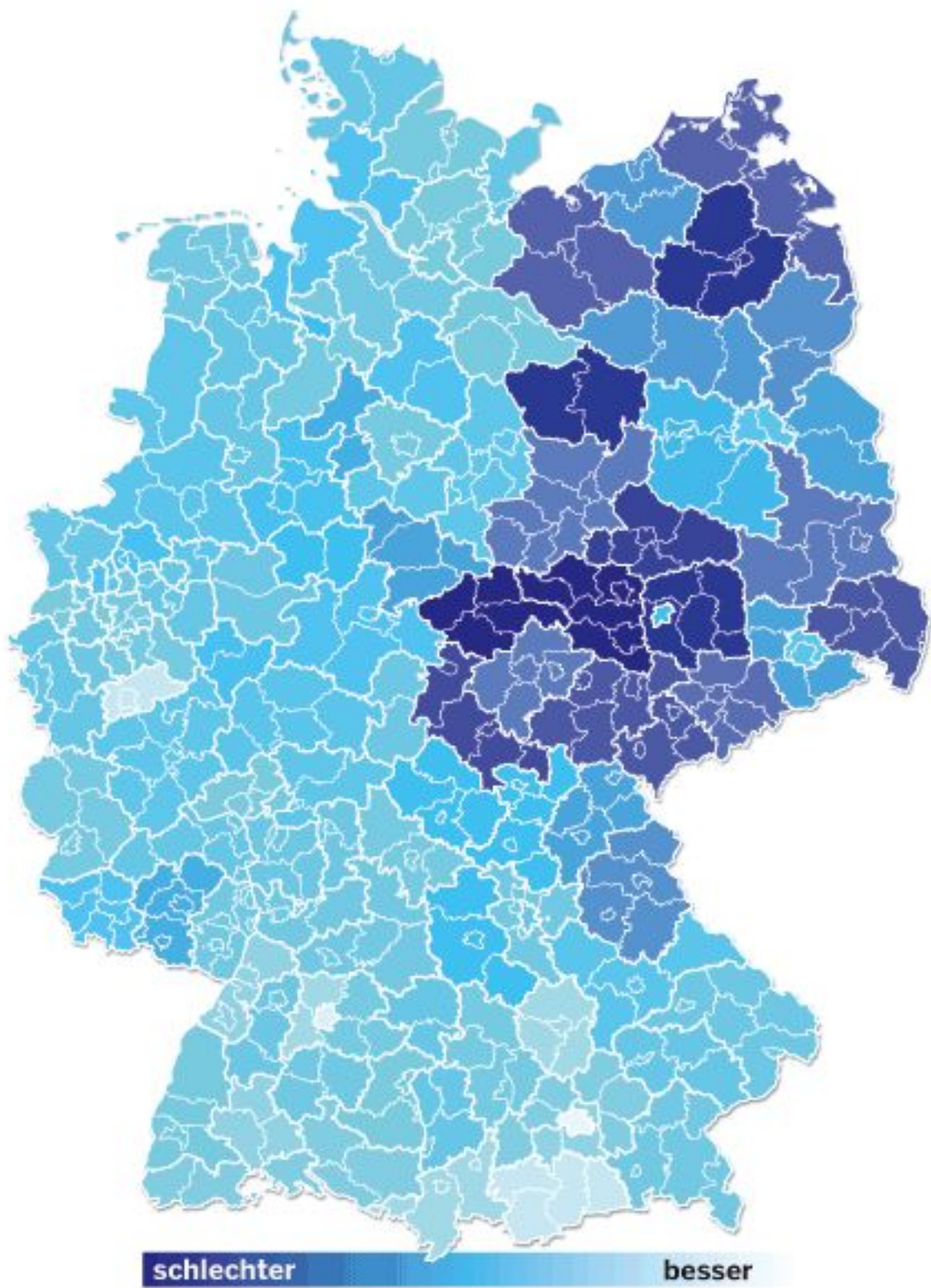


<참고2>

‘실업에 대한 근심’ 온라인 설문조사결과(117개 州)

1	Halle/Saale	62	61	Landshut	41
2	Nordthüringen	61	62	Rhein Hessen-Nahe	41
3	Mecklenb. Seenplatte	59	63	Niederrhein	41
4	West Sachsen	59	64	Oldenburg	41
5	Altmark	59	65	Nürnberg	41
6	Dessau	58	66	Osnabrück	41
7	Südthüringen	57	67	Ostwürttemberg	41
8	Südwest Sachsen	56	68	Starkenburger	40
9	Ostthüringen	56	69	Donau-Wald	40
10	Oberlausitz-Niederschl.	56	70	Nordschwarzwald	40
11	Westmecklenburg	55	71	Osthessen	40
12	Vorpommern	55	72	Bayerischer Untermain	40
13	Chemnitz-Erzgebirge	54	73	Erftkreis	40
14	Lausitz-Spreewald	53	74	Arnsberg	40
15	Mittelthüringen	53	75	Franken	39
16	Magdeburg	53	76	Krefeld/Neuss	39
17	Oberpfalz-Nord	51	77	Ostfriesland	39
18	Uckermark-Barnim	51	78	Rheinpfalz	39
19	Prignitz-Oberhavel	50	79	Industriereg. Mittelfranken	39
20	Mittl. Mecklenb./Rostock	50	80	Südostoberbayern	39
21	Oberfranken-Ost	49	81	Unterer Neckar	39
22	Oderland-Spree	49	82	Essen	39
23	Göttingen	49	83	Neckar-Alb	39
24	Ob. Elbtal/Osterzgebirge	49	84	Hamburg-Umland-Süd	39
25	Westpfalz	48	85	Wuppertal	38
26	Schaumburg/Nienburg	48	86	Leverkusen/Berg. Land	38
27	Havelland-Fläming	47	87	Würzburg	38
28	Westmittelfranken	46	88	Hannover	38
29	Bremen	46	89	Trier	38
30	Oberfranken-West	46	90	Stuttgart östl. Umland	38
31	Main-Rhön	46	91	Augsburg	38
32	Paderborn	46	92	Bremen-Umland	38
33	Leipzig	46	93	Köln Stadt	38
34	Siegen	45	94	Frankfurt	38
35	Emscher-Lippe	45	95	Lüneburg	37
36	Bielefeld	45	96	Schleswig-Holstein Mitte	37
37	Schleswig-Holstein Süd.	44	97	Südlicher Oberrhein	37
38	Bremerhaven	44	98	Mönchengladb./Viersen	36
39	Südheide	44	99	Düsseldorf	36
40	Nordhessen	44	100	Wiesbaden/Taunus	36
41	Duisburg	44	101	Schleswig-Holstein Süd	36
42	Saar	44	102	Donau-Iller (BW)	36
43	Mittelhessen	43	103	Hamburg	36
44	Regensburg	43	104	München nordw. Umland	35
45	Berlin	43	105	Hochrhein-Bodensee	35
46	Dresden	43	106	Bodensee-Oberschwaben	35
47	Münster	43	107	Ebersberg/Erding/Freising	35
48	Braunschweig	42	108	Schwarzw.-Baar-Heuberg	34
49	Hamm	42	109	Starnberg/Lk. München	34
50	Hildesheim	42	110	Mittlerer Oberrhein	34
51	Emsland	42	111	Ingolstadt	33
52	Oberhausen/Mülheim	42	112	Ludwigsburg/Böblingen	33
53	Mittelrhein-Westerwald	42	113	Allgäu	33
54	Offenbach/Hanau	42	114	Bonn	31
55	Schleswig-Holstein Ost	41	115	Oberland	31
56	Bochum/Hagen	41	116	Stuttgart	30
57	Aachen	41	117	München	28
58	Schleswig-H. Nordwest	41			
59	Dortmund Stadt	41			
60	Donau-Iller (BY)	41			

✧ infografik: infographic.de/Jan Schwowchow
Quelle: Perspektive 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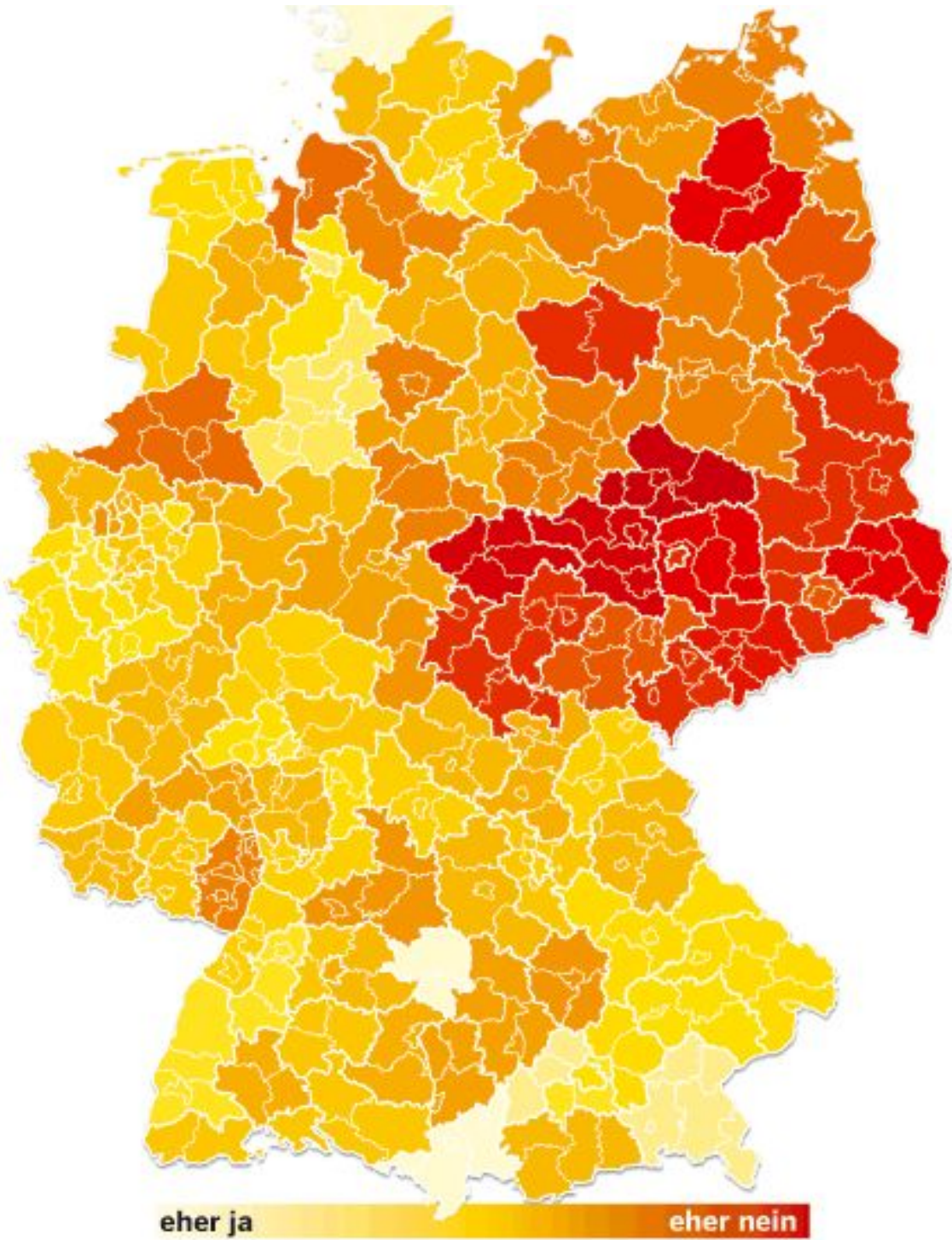


<참고3>

‘청년층의 자립성 의지’ 온라인 설문조사결과(117개 州)

1	Allgäu	62	61	Oberland	52
2	Schleswig-H. Nordwest	61	62	Schleswig-H. Südwest	52
3	Ostwürttemberg	61	63	Niederrhein	52
4	München nordw. Umland	59	64	Schwarzw.-Baar-Heuberg	51
5	Südostoberbayern	59	65	Emscher-Lippe	51
6	Schaumburg/Nienburg	58	66	Stuttgart	51
7	Bremen	58	67	Siegen	51
8	Bielefeld	58	68	Lüneburg	51
9	Nordschwarzwald	57	69	Donau-Iller (BW)	51
10	Südlicher Oberrhein	57	70	Südheide	51
11	Starnberg/Lk. München	57	71	Oberfranken-West	51
12	Hamburg	57	72	Oldenburg	51
13	Krefeld/Neuss	57	73	Braunschweig	51
14	Frankfurt	57	74	Arnsberg	51
15	Landshut	56	75	Hildesheim	50
16	Düsseldorf	56	76	Schleswig-Holstein Ost	50
17	München	56	77	Rheinessen-Nahe	50
18	Aachen	56	78	Augsburg	50
19	Bonn	56	79	Nordhessen	50
20	Wiesbaden/Taunus	56	80	Donau-Iller (BY)	50
21	Köln	56	81	Hamm	50
22	Bremen-Umland	56	82	Oberhausen/Mühlheim	50
23	Donau-Wald	55	83	Ingolstadt	49
24	Bayerischer Untermain	55	84	Franken	49
25	Mönchengladb./Viersen	55	85	Duisburg Stadt	49
26	Regensburg	55	86	Osthessen	49
27	Ostfriesland	55	87	Mittleres Meckl./Rostock	49
28	Dortmund	55	88	Magdeburg	48
29	Erftkreis	55	89	Berlin	48
30	Ebersberg/Erding/Freising	55	90	Rheinpfalz	48
31	Unterer Neckar	54	91	Göttingen	48
32	Schleswig-Holstein Süd	54	92	Havelland-Fläming	48
33	Mittlerer Oberrhein	54	93	Westmecklenburg	48
34	Leverkusen/Berg. Land	54	94	Hannover Stadt	48
35	Würzburg	54	95	Vorpommern	48
36	Bochum/Hagen	54	96	Hamburg-Umland-Süd	48
37	Mittelhessen	54	97	Prignitz-Oberhavel	48
38	Nürnberg	54	98	Münster	47
39	Oberfranken-Ost	54	99	Bremerhaven	47
40	Wuppertal	53	100	Ostthüringen	46
41	Ludwigsburg/Böblingen	53	101	Dresden Stadt	46
42	Bodensee-Oberschwaben	53	102	Uckermark-Barnim	46
43	Westpfalz	53	103	Südthüringen	44
44	Offenbach/Hanau	53	104	Mittelthüringen	44
45	Hochrhein-Bodensee	53	105	Altmark	44
46	Industriereg. Mittelfranken	53	106	Oderland-Spree	44
47	Trier	53	107	Lausitz-Spreewald	44
48	Schleswig-Holstein Mitte	53	108	Ob. Elbtal/Osterzgebirge	44
49	Emsland	53	109	Leipzig Stadt	44
50	Osnabrück	53	110	Südwestsachsen	44
51	Neckar-Alb	53	111	Chemnitz-Erzgebirge	43
52	Essen	52	112	Mecklenburg. Seenplatte	42
53	Paderborn	52	113	Oberlausitz-Niederschl.	41
54	Saar	52	114	Westsachsen	41
55	Westmittelfranken	52	115	Nordthüringen	39
56	Oberpfalz-Nord	52	116	Halle/Saale	39
57	Mittelrhein-Westerwald	52	117	Dessau	38
58	Stuttgart östl. Umland	52			
59	Starkenburger	52			
60	Main-Rhön	52			

✧ infografik: infographic.de/Jan Schwowoch
Quelle: Perspektive Deutschland



〈 붙임-4 〉 통계 등록법

2007. 2. 12

통계 등록법 39a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에 관한 법률 후속 인쇄
1998. 6. 16일자 통계 등록법

※ 원문(별첨)

연방 통계청, 비스바덴 2007; 다운로드, 개인적인 용도와 직무상 목적으로 하는 복제와 배포는 출처가 표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상업적 활용은 불허.

통계 등록법 39a

발췌 인쇄본:

통계 용도로 사용되는 기업체 등록 구축의 협회내부 조율에 관한 1993년 7월 22
일자 위원회의 조례 집행에 관한 법 (EWG) 2186/93번

1998년 6월 16일자

(BGBl. I S. 1300, 2903)

연방 주 의회는 참의원의 동의로 이하의 법안을 결의했다.:

1항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에 관한 법
(통계 등록법-StatRegG)

1장

- (1) 2장-6장까지 상이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2장-6장까지 언급된 경우는 그 때
그 때마다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 관할 구역에 전달한다.
1문에 따른 전달 시 기술적 연루에 관한 조치는 참여하는 경우에 의해 일치
되어 확정된다.
- (2)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1단락에 의거하여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하여 손에 넣을 수 있는 출처의 납입금을 활용할 수 있다.
- (3) 연방 통계법의 16장은 1단락에 따라 전달된 대인, 대물 관계에 관한 개별 납
입금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유효하다.

2장

- (1) 1995년 12월 18일자 법 24항을 통하여 변경된 1995년 10월 11일자 납세
통계에 관한 법 (BGBl. I S. 1250) 2장 1-3단락과 5장 1-3단락에 의거한 특징

과 관련된 재무청은 그 때 그 때마다 유효한 초안에서 중재하는 한, 통계 등록 용도로 판매세 의무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납입금이 활용될 수 있다.:

1. 납세 의무의 기간
2. 법 형식
3. 개별경제분야
4. 기구체의 일원
5. 수입 매출과 무관한 납세 가능한 매출과 협회내부의 제조업
6. 조세번호, 조세번호 변경의 경우
7. 최소행정구역 기준

1문에 의거한 데이터 전달의 범위 안에서 재무청은 통계 등록의 용도로 판매세 의무자들의 이하의 지시사항을 추가적으로 전달한다.

1. 상호나 회사
2. 주소
3. 판매세 일치번호

-
- 0) 1998년 6월 24일자 유효
 - 1) 2002년 6월 26일자 법안 3항 1단락을 통해 변경 (BGBl. I S. 2867)
 - 2) 2003년 12월 23일자 법안 38항을 통해 변경 (BGBl. I S. 2848)
 - 3) 2005년 6월 9일자 법안 1항을 통해 변경 (BGBl. I S. 1534)
 - 4) 2005년 9월 22일자 법안 4항 13단락을 통해 변경 (BGBl. I S. 2809)
 - 5) 2006년 11월 10일자 법안 12항 1단락을 통해 변경 (BGBl. I S. 2553) 2

(2)

1. 제조업 수입
2. 자영업 수입
3. 1단락 1문 1번-4번, 6번, 7번에 의거한 납입금

1. 상호나 회사
2. 주소

(3)

2a장

연방 조세중앙청은 판매세법 2장 2단락 2번에 의거하여 기구협회와 기구 운영자를 위해 연방 통계청에 이하의 납입금을 전달한다.

1. 이제까지의 납세번호 변경 시에, 재무청 번호를 포함한 납세번호
2. 판매세 일치번호
3. 상호나 회사, 주소
4. 법 형식
5. 기구협회와 기구 운영자로서의 특징
6. 기구협회의 경우 추가적으로 납세번호, 기구 운영자의 판매세 일치번호와 기구체 가입의 시작과 끝을 위한 납입금

연방 통계청은 연방 주 통계청 관할 부서에 납입금을 전달한다.

3장

(1) 연방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에 아래와 같은 납입금을 전달한다.

1. 상호나 명칭, 주소, 최소행정구역 기준
2. 개별경제분야
3. 사회보장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
4. 전달된 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신원일치기호 (기업번호)

- (2)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연방 노동청 통계 용도를 제외하고 방수된 영역에서 통계등록에 등재되어있는 1단락 2번과 4번에 대한 납입금을 매해 관여된 직무를 통해 확정된 수취일에 그 때 그 때마다 전달한다.

통계등록에 등재되어있는 개별경제분야에 대한 납입금이 연방노동청에 의해 전달된 1단락 2번에 대한 납입금과 다른 경우에 그렇다.

상호나 명칭, 최소행정구역 기준을 포함한 주소에 관한 납입금이 연방노동청에 의해 전달된 납입금이 1단락 1번과 다른 경우에는, 차이점을 입증하는 기호가 1단락 4번에 대한 납입금과 함께 같이 전달된다.

4장

상공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의 현행 규정에 관한 법 2장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협의회 담당자에 전달한다.:

1. 상호나 회사, 최소행정구역 기준을 포함한 주소
2. 경제적 주요 활동과 부수 활동 (개별경제분야)
3. 제조업 등록에 등록된 활동 시작 날짜에 의거한 경제적 주요 활동 개시 시점
4. 경영 활동 최종 과제 시점
5. 본점이나 지점의 경우에 상거래 등록이나 조합등록에 등재된 장소와 번호
6. 최종적으로 인도된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 신원확인기호 (회의소와 신원확인번호)
7. 추가적으로 본점의 경우: 법 형식, 재무청 번호와 납세번호
8. 추가적으로 지점, 사업장과 판매처의 경우: 1번-6번, 법 형식 (7번)과 다른 회의소의 일원에 관한 본점의 납입금,

4a장

- (1) 지역 법무 행정은 전자 상거래 등록, 조합 등록, 파트너쉽 등록에 관해 상법전 8b장 (3단락 2문*)에 의거하여 기업 등록에 전달하는 등재된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달한다.

- (2) 매 해 요구하는 경우에 1장 1단락 1문과 다른 1단락에 의거한 전달이 따른다.

*) 상법전 8b 단락 이러한 문건의 24-25쪽 참고 4장

5장

수공업회의소는 해당지역 회의소에 이하의 납입금을 전달한다:

1. 상호나 회사, 주소
2. 법 형식
3. 수공업자 명부나 허용이 자유로운 수공업이나 수공업과 유사한 기업 소유자 명부에 등록된 등재 시점
4. 수공업 규정 1장에 의거한 수공업체 용도 : 7장에 의거한 등재 원인과 수공업 규정의 119
5. 수공업자 명부나 허용이 자유로운 수공업이나 수공업과 유사한 기업 소유자 명부에 등록된 등재 삭제 시점
6. 수공업자 명부 1장과 18장 2단락 1문에 의거한 수공업체 용도: 영업 중인 수공업장 관련 또는 몇 몇 수공업장 실시: 수공업자 명부 18장 2단락 2문에 의거한 수공업장과 유사한 기업을 위한 용도: 영업 중인 수공업장과 유사한 기업 관련 또는 몇 몇 수공업장과 유사한 기업 실시
7. 재무청 번호와 납세번호
8. 최종적으로 인도된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 신원확인기호 (회의소와 신원확인번호)

6장

통계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직업연맹과 4장과 5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의소는 해당 구성원과 단위가 1장 1단락 1문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하의 납입금을 일회적으로 또는 몇 년을 간격으로 전달한다.

1. 상호나 회사, 최소행정구역 기준을 포함한 주소
2. 법 형식
3. 활동 종류

7장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2장 1단락 1문 6번, 2문 3번, 3장 1단락 4번, 4장 6번, 5장 8번에 의거하여, 통계 등록 구축과 집행의 용도로 이름, 주소, 법 형식, 기호와 관련된 납입금을 징수한다.

일관성이 있는 개별경제분야나 일관성 간의 맥락이 명백히 단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의 등재와 일관성 간의 맥락과 관련된 납입금은 징수될 수 있다. 징수가 일관성 있게 통계 등록에 수용되는 경우에, 정보고지의 의무가 따른다. 소유주나 사장은 정보고지의 의무가 있다.

8장

- (1) 경제나 환경 통계를 배열하는 연방 주 법 규정이 통계 등록 상에 상응하는 징수 지표를 규정하는 경우에,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은 이러한 지표와 관련된 납입금을 전달할 수 있고 징수를 예측할 수 있다.
- (2) 통계 등록에 등재된 데이터들은 연방통계법 13a장 기준에 의거하여 다른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다.

9장

연방 주 통계청과 지역 통계청은 장소적인 단위 (기업, 사업장)를 위한 이하 지표와 관련된 통계 등록 출처의 납입금을 통계 업무 관할인 연방통계법 16장 5 단락 2문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소행정구역이나 협회의 관할 구역에 전달한다.

1. 경제적 주직과 부직 (개별경제분야)
2. 총 근로자수와 사회보장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
3. 최소행정구역 기준, 거리와 번지 수

1문 3번에 의거한 거리, 번지 수에 관한 언급은 작은 공간 단위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된 장소 단위의 등재에만 활용될 수 있다.

발취 인쇄본

1998년 6월 16일 법안에 관한 근거
(BT 인쇄물 1998년 1월 22일 13/9696번)

A. 개론

I.

EU 회원국은 통계 활용 목적으로 (ABl. EG Nr. L 196 S.1) - VO 2186/93번 기업 등록 구축의 공동체 내부 조정에 관한 1993년 6월 22일자 위원회의 법령 (EWG) 2186/93번에 의거하여 통계 활용 목적의 기업 등록을 구축하고 집행 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경제 활동에 책임감 있는 모든 법적 단위와 경제 활동에 달린 장소 단위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도록 GDP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은 통계 등록에 등재되어있다.

계획, 준비, 통계 징수 집행의 경우와 결과의 보급, 평가의 경우에 통계 등록은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합리화 효과가 추구될 수 있다. 합리화 효과는 특별히 정보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하고, 표본 테스트와 관련된 일관성을 정기적으로 로테이션 시켜 줌으로서 정보고지 의무자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도록 기여한다.

통계 등록은 예를 들어 생산업의 작은 기업의 경우, 통계법에 의거하여 매출과 근로자 수가 파악되는 징수를 대체할 수 있다. 기능적이고 완벽한 통계 등록의 경우에 또한 8-10년 간격으로 경제의 구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 포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계 등록에 등재된 정보 외의 납입금이 징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

동시에 통계 등록은 일반적으로 통계청의 데이터상황을 개선한다. 통계 등록은 경제 구조의 분석, 기업 규모에 관한 연구, 개별적인 개별경제분야의 횡, 종단면 비교, 경제 구조변화의 조사와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평가하게 한다.

등록 납입금은 통계 비밀유지를 토대로 한다. 단일 납입금은 단지 통계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다. 등록 납입금은 통계청에 대표적인 표본 테스트를 하는 선별 근거로서 기여한다. 통계 징수 집행 시에 징수 단위 수신처에 관한 등록은 징수

자료의 주소쓰기와 발송을 조절한다. 이러한 등록은 입금통제를 하용하고 애매 모호한 재 질문을 간단하게 해준다. 통계 등록은 보급 시에 근본 총체성의 표본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예상 최종 득표수에 대한 틀을 마련해준다. 이 외에도 통계 등록은 통계 결과의 연결 관계와 이중질문의 예방과 관련하여 등록된 신원확인 번호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통계 등록 상의 구축과 집행을 위해 비용과 부담 또한 수익, 부담 경감, 절약에 직면해 있다. 수익 비용관계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통계 등록 상의 적용과 육성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해답이 필요하다.

- 데이터 처리의 지속적인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약 400만개에 달하는 단일 자료문은 파악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실현가능해야한다.
- 존재하는 데이터출처와 상태를 산출한다.
- 등록에 등재되는 일관성에 가능한 한 덜 부담을 지운다.
-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협의 가능해야한다. 7

이러한 기본생각에는 법령 2186/93번 산출이 포함되어있다. 통계 등록 구축과 집행을 경우에 이러한 산출은 통계 징수와 총체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출처원 납입금의 활용과 현행 행정, 사법 데이터 출처 정보의 인수를 예측한다. (법령 2186/93번 5항 1단락과 7항)

등록을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통계 징수의 단일 납입금이 충분하지 않다. 생산업에 있는 현행 카드식 색인은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카드식 색인과 이러한 징수로 인해 기업을 위한 약 200만개의 단일데이터문의 주요구성요소를 충족시킨다. 등록 납입금의 이러한 존속은 재 책정, 현실화, 정리를 필요로 한다.

재 책정은 통계 등록 상의 새로운 공지, 변경과 퇴거를 포괄한다. 제조업 청에 의해 1996년부터 정돈된 제조업 공고란에 게시된 통계의 틀 안에서, 제조업 분야 통계청은 정보를 포함한다. 통계 등록에 기본존속과 관련된 이러한 변경 등록의 등재는 이름, 주소, 법 형식 등의 조정을 통해 뒤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절차는 비용이 들며 특히나 수신처와 법 형식 변경, 융합, 분리와 퇴거의 경우 자주 귀속 문제와 의혹의 경우를 유발한다. 따라서 통계 등록 상 기본 잔고의 재 책정

은 한계선에서만 성공적이다. 장차 재 책정은 통계청의 긴장된 인사상태와 재정 상태로 인해 침해받는다.

법령 2186/93번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연간 통계 징수, 전반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출처의 납입금과 행정 데이터의 납입금을 근거로 처리된 현행 등록 잔고의 실현을 위하여, 통계청은 단독으로 이제까지 등록된 단위 중 일부 용도로 필요한 납입금을 제공하는 징수에 손을 댈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중단의 한계가 있는 이러한 징수가 표본 테스트로서 또는 단지 경제의 일부영역에서만 집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기업 친화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 영역에서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등록 잔고 정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수는 납입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계 등록의 실현과 완벽성을 위해 특히나 남아있는 행정 데이터가 파악되어야한다. 남아있는 행정 데이터 출처의 단일 납입금 활용은 통계청에게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접근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령 2186/93번은 여기서 국법의 용량표시를 참조하도록 지시한다. 통계법률 규정과 행정 데이터에 의해 집행과 활용이 규정되는 독일 법과 법령에는 이제까지 통계 등록의 목적과 내용을 위한 단일납입금의 전달을 예상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연방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으로 하여금 행정 데이터에서 나온 법령 2186/93번에 언급된 정보를 통계 등록에 등재된 채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 규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 연방 주 차원에서 동일하고 부처를 넘나드는 식별번호의 도입은 현 시점에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 게다가 입법안의 급박함도 있다. 법령 2186/93번은 첨부 1에서 통계 등록 구축을 위한 기한을 예측한다. 이후에 기업은 이미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또한 장소적 단위(사업장)는 통계 등록 이후 1년 후에 등재가능하다. 생산업과 농업 분야 이외의 연방통계가 이제껏 포괄적인 통계 등록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령 8항 2186/93번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일찍 이 기한의 연장이 청구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장제안에 상응하였고 독일 연방공화국은 단계적으로 통계 등록의 구축을 허가했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독일 통계 등록을 위한 구축기한은 끝난다. 통계청의 이러한 구축기간과 필요한 준비작업으로 인해 입법안은 급박하며 현행 입법기간 내에 체결되어야한다. 다른 경우에는 기한이 엄수될 수 없으며 이는 독일 연방 공화국이 유럽 대 법원에서 계약위반재판에 서도록 위협한다.

II.

현행 법안은 1항에서 (통계 등록법) 데이터로부터 나온 정보를 통계등록 구축과 장려를 위해 연방 주 통계청, 연방 통계청에 전달하는 것을 예측한다. 상용데이터가 통계등록에서 요구하는 납입금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중 기입은 예방되고, 언급된 데이터 중에서 다른 출처가 없는 통계 등록의 용도로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되어야한다.

- 재정행정 (2장)
- 연방 노동청 (3장)
- 상공회의소 (4장)
- 수공업 회의소 (5장)

이러한 원리는 통계등록의 용도로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납입금이 데이터 주도적인 관할과 분리될 수 없는 경우와 다른 출처를 지닌 데이터의 비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중단된다. 제조업 공고란에 게재된 납입금은 통계청 뿐 아니라 (제조업 법규 14장 8a 단락), 제조업 법규 14장 5 단락에 의거하여 상공회의소, 수공업 회의소, 연방노동청에, 또한 지출법규 138장에 의거하여 재정행정에서 사용된다. 데이터상과 다른 출처의 데이터상의 데이터 납입금 분리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주도적이 관청이나 통계청에게 기대할 수 없다.

통계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하여 특별히 이하의 정보가 법령 첨부 2 2186/93에 의거하여 필요하며 전달된다.:

- 경제 단위의 분명한 신원확인과 관련된 납입금
-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의 납입금
- 경제 활동의 개시 내지는 중지 시점에 대한 납입금
- 경제 단위의 규모에 관한 정보 (근로자 수와 매출)

이 과정에서 경제 활동 내지는 신원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통계 등록을 위한 데이터 출처로서 데이터 적합성을 위하여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 기업규모에 대한 사항은 모든 데이터를 통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수 편에서 근거를 찾아보겠다.

신원확인 지표로는 이하의 내용이 활용된다.

- 이름, 상호나 기호
- 법 형식
- 주소
- 상용 데이터 일치확인에 관한 기호

현재 단일한 경제 단위 신원확인번호가 없기 때문에 상용데이터의 단일 데이터문들은 통계 등록 상 근본적으로 이름이나 회사, 법 형태와 주소로만 단일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방책으로만 통계청의 첫 조사 이후에 부분적으로만 성공에 도달한다. 예를 들어 상이한 정서법과 상용데이터 실현을 근거로 주소와 기업의 법 형식을 일치시킬 수 없는 많은 의혹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업에 재문의 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좋지 않게 남아있다.

경제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기업으로 하여금 상용데이터로 등록 양식에 등록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다. 기업은 자사의 번호로 연방 노동청과 상공 회의소 멤버 번호와 특정한 경우에는 자신의 수공업자 회의소 번호의 기업 데이터에서 자사의 번호인 세금번호를 등록하고 등록양식을 통계청에 다시 보낸다. 이 등록양식은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되어있다. 상용데이터의 등록된 일치 번호는 통계 분야에서 단일데이터를 분명히 부가시킨다. 통계등록 상 상용데이터의 “일치에 관한 기호”라는 기호의 수용은 상용데이터와 단일데이터의 결합과정만을 간소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호가 한 번 통계 등록에 등재되면 부가 비용이 줄어든다. 단지 새로운 가입자는 이름, 법 형식, 주소에 의해 결합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일치 기호 외에도 이러한 번호의 변경에 있어 상용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이끄는 입지에 의해 각각 최종으로 전달된 기호는 통계청에 전달되어야한다. 통계 등록 시에 상용데이터에 의해 전달된 각각의 기호를 위해 단지 실질적인 기호만이 도입된다.

개별경제분야 시스템상의 부가내용은 기업의 경제 활동에 관한 그림을 중재하는 모든 지시에 소용이 있다. (예: 경제 활동, 수공업) 올바른 개별경제분야 시스템에 부가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어떠한 통계 징수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경제분야는 기업의 규모 외에 가장 중요한 계층 지표를 제시하고 또한 분석 목적과 구조 연구에 필요하다.

통계청 등록 법은 게다가 6장에서 직업연맹을 통한 수신처 전달을 규정하고, 4장과 5장에서 언급된 협의회를 통해서는 아니다. 통계청이 상용데이터 지시를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로 부가할 수 있는 한, 7장에서 일치와 개별경제분야 시스템상의 부가내용에 관한 통계 징수는 통계 등록 단위별로 배열된다. 그 외에도 통계 등록 상 지시와 관련된 특정 활용 가능성에 관한 8장의 규정을 포함한다.

B. 비용

1. 공공예산의 비용

연방 주 통계청에 의해 규정된 연방통계청의 비용 산정에 의하면 법안을 통해 이하의 비용이 든다. (1997 기준)

1.1 연방통계청에 의하면 구상 작업을 통계 등록 법 상 실효시키는 것에 이하의 비용이 든다.

DM 비용		
대인비용	대물비용	총계
4 725 231	263 261	4 961 492

4년으로 배분 (1998-2001)

1.2 연방 주 통계청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a) 통계 등록 법에 의거한 행정 데이터의 단일 작업 비용 (자료 재 전달과 같은 조합모델에 의거한 설문조사 포함)

DM 비용		
대인비용	대물비용	총계
25 729 200	17 301 500	43 030 700

b) 이하 기간 동안의 통계 등록 법에 의거한 행정 데이터의 연간 작업 비용 (자료 재 전달과 같은 조합모델에 의거한 설문조사 포함)

DM 비용		
대인비용	대물비용	총계
13 262 500	6 266 300	19 528 800

1.3 연방통계청과 연방 주 통계청의 프로그래밍 비용은 4 088 000 DM에 달한다.

2. 경제 비용

이전 법안에 의거한 통계 등록 구축과 집행에 관한 규정은 경제의 공조 (부담)를 필요한 규모로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것은 통계청 자료를 위해 활용되는 것을 통해 달성되었다. 게다가 통계 등록을 위해 통계청은 공동 자료원 출처의 자료 또한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상용 데이터 출처의 단일 데이터 문을 이름, 주소, 법 형식의 비교를 통해 부가시키는 것을 준수한다. 일치 및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부가와 관련된 자료에 따른 단일안의 설문조사는 단지 이하의 경우에서만 필요하다. 단일 데이터 문이 의혹이 가지지 않고 완전히 부가될 수 없을 경우이다.

통계 등록 구축에 활용하는 통계청에 이미 약 2백만 단위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연방노동청과 연방 주 재정 행정에 의하여 전달되는 단일 데이터 문은 3, 4백만의 규모에 달한다. 그 외에도 상공업 회의소 통계청은 약 3백만 데이터문과 수공업회의소 70만 데이터문을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문은 3, 4백만 단위를 포함한 단위와 관련이 있다. 집행된 조사에 따르면 단일 데이터문의 약 30%가 컴퓨터에 의해 지지되는 조정을 통해 분명히 부가된다.

그로서 3백만 4백만에 달하는 통계 등록에 등재되는 단위의 총계에 의해 약 2백1천-2백8천만 단위가 규정 상 단지 한 번 통계 등록 구축에 관한 공조가 요청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단일 중소기업 경영자, 자유로운 직종이나 기구의 자영업자에게 생계 활동 없이 가능한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금까지 이뤄진 꼭 필요한 설문조사는 밝힌다. 그때 그때마다 단위는 등록 양식서에 상용 데이터의 기호 번호를 등록하고 담당 통계청에 다 기입된 등록 양식서를 다시 반송하기 위해서 이미 인쇄된 주소와 법 형식을 테스트 해보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평균 상 발생하는 시간 비용은 약 10분이다.

이와 관련된 비용과 반송 용도의 우편료는 단일 기업의 경우 평균 20 DM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주요 자료의 경우 통계 등록 구축 시에 경제 공조로 인해

약 4천 2백만- 5천 6백만의 경제 비용이 생긴다.

제 기능을 하는 통계 등록은 통계 상 징수에 의한 경제적 경감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관점에서 이러한 비용의 평가를 참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 상 징수는 더 작은 임의 추출 시험과 정기적인 로테이션으로 집행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생산 제조업의 작은 기업에게는 연간 징수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게다가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에 의한 조사를 포기하는 한, 통계 등록은 계산을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점이 정확히 추정하지 않더라도, 경제에 발생하는 경감현상은 장기적으로는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경제 부담이 통계 등록을 할 때 더 우세하다.

가격이 끼치는 영향

통계 등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도 이러한 비용이 규모로 인해 측정 불가능한 가격 수준, 특히나 소비자 가격을 지닌다는 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

C. 특수 영역

항목 1 (통계 등록 법)

항목 1은 통계 등록 법을 독자적인 상용법으로서 실효화시킨다.

1장

(1) 규정은 2-6장에서 언급된 경우에서 데이터의 전달에 대해 공동으로 효력 있는 지시사항을 포괄한다. 원칙적으로 데이터의 수용은 연방 주 통계청의 담당 관할에 해당한다.

연방 통계청의 관할성은 예를 들어 징수되는 것이 중앙 통제차원에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집행되거나 혹은 데이터를 주도하는 경우에 중앙 통제의 수용인에게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데이터는 청구하는 경우에 송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송달이 연간 한번만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주도하는 경우는 비용 상환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행정 비용 법에 의거하여 근본적으로 공무집행 또한 소송비용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분명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행정 비용 법의 8장 1단락은 단독으로 이러한 경우에 개인에게는 무료 혜택이 확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위한 요금이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명부 열람 비용은 유료라는 말이다. 법안으로 인해 통계청이 각 비용과 명부 열람 비용의 지불을 면제시키는 반면에,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은 행정 비용 법 내에 있는 규정 이상의 것을 다룬다.

부가 징수나 작업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송달은 이미 주어진 자료의 데이터, 즉 이미 상용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에 제한된다.

송달 상 기술적으로 처리되어 합의된 확정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 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를 전달 할 때 데이터를 이끄는 경우가, 가능한 한 기계적으로 평가 가능한 데이터 전달 매체와 단일한 데이터 인도 문을 활용하는 것이 추구된다. 그 외에도 데이터를 이끄는 경우는 제 3자를 통해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 (2) 통계 용도의 설문 조사에 의해 기업이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동시에 또한 공통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출처 역시 통계 등록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통계청이 데이터 출처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이면서도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신뢰성 부분에서 연방 통계청의 요구에 상응하는 한, 데이터 출처로서 예를 들어 상업 등기, 조합 등기, 파트너 쉽 등기, 협회 등기, 연방 정부의 관보, 기업 매뉴얼, 의회 회원 명단, 직업기구, 전화번호부, 사업보고가 고찰된다.
- (3) 이러한 규정은 연방 통계 법 16장에 의거하여 전달된 단일 자료의 비밀 유지를 규정한다. 데이터를 주도하는 경우들에 의해 전달되는 자료들은 조세

비밀, 사회 복지 비밀 내지는 연방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토대가 되어있다.

연방 통계법의 16장에 따라 통계 비밀 유지의 경우, 이러한 보호규정은 지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한다. 경제 행정상의 이유로 여러 통계청들이 모든 단일자료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계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전달함으로써 중재된 자료를 위해 유효해야 한다. 연방 통계법의 16장인 단일자료의 비밀유지를 참고로 해서 따라서 전달되는 단일자료에 관한 모든 이러한 법규에 의거하여 지시된다.

이러한 규정은 해명에 기여한다.

2장

2장은 재무행정 분야 데이터 출처의 지시에 의한 인도를 규정한다.

- (1) 판매세 납세 의무자들의 데이터가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출처들 중 하나를 제시한다. 데이터에는 자영업자이며 지속적으로 수입의 성취를 하기 위해 생업 또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이 기록되어 있다. 판매세 사전 신청의 양도에 의무화된 기업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은 현행 법제에 의거하여 연간 예산으로 32 500 DM 이하의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인이 아니다. 자회사는 특별히 입증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조직계) 모회사와 함께 고찰된다.

양도규정 137, 138장 단락에 따라 납세 의무자 (자연인, 법인)들의 재무관리는 경제활동의 개시와 최종 입장에 관한 포괄적인 신고를 포함한다. 이러한 납입금으로 재무행정은 납세 의무의 지속기간 (시작과 끝)을 확정한다. 이에 상응하는 납입금은 2186/ 93번에 의거하여 통계 등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록현황의 실현과 관련되어 기업의 인구 통계학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재무 행정의 기본 정보 업무에서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의 부가가 고려되는 각 납세 의무자가 다섯 자리로 암호화된 개별경제분야가 부가된다.

이러한 부가는 모든 납세 통계 상 유효하다. 1993년부터 개별경제분야 등급에서 유래된 납세 통계 용도의 근본구조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유기성의 일원”이라는 특징은 납세 의무가 있는 예산과 관련된 보완적인 특징이다. 이는 이하를 의미한다.

- 이러한 단일성을 위해 입증된 납세 의무가 있는 예산이 전 조직계와 관련된 기구 담당 부서 (소위 모회사)의 경우.
- 기구 담당 부서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성을 위해 납세 의무가 인도될 수 없는 기구 협회 (소위 자회사)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것은 법인체 조세법과 영업세법에 따라 기구체에 유효하다.

기구체의 일원에 관한 지시는 연방 재정청의 기구체 데이터가 추론되어야 한다. 예산이 통계 징수 기구체의 단일 기업을 위해 마련되지 않는 한, 징수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구체의 예산을 근로자 수로 기구체와 기구 협회를 더 자세히 분류되는 것이 시도되어야 한다.

기업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2186/93 번은 근로자 수의 기입 외에도 재화와 서비스로 인한 순 매출 수익에 목적을 맞춘다. 순 매출 수익은 매출세 선불 계산 산정의 용도로 재무청에 의해 기입되는 납세 의무가 있는 매출에 상응한다. 납세 의무가 있는 매출은 매출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고 면세되는 공급량, 기타 업무 성과, 자가소비와 공동체 내부의 제조업과 같은 수입매상을 포괄한다. 순 매출 수익의 기입은 그럼에도 2186/93번에 따라 그럼에도 수입 매출과 공동체 내부의 제조업이 무시된다. 14

- (2) 판매세법 4장에 의거하여 납세 의무자, 관련 공급, 기타 능력과 자가소비가 자유로운 경우에 수입이 (제조업과 자영업의 수입) 전달된다.

소득의 전달은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

- 제조업체 단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조업체 내지는 자영업의 소득

이 (무엇보다도 프리랜서) 전달된다. 더욱이 이는 사단법인과 공동체와 관련된 수입이다.

- 사단법인과 공동체의 수입은 공동 출자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그 때 그 때마다 전달된다.
- 법인체세의 세액을 산정하는 범위 안에서 확정되는 수입은 법인 (무엇보다도 합자 회사)을 위해 전달된다.

게다가 1, 2 단락에 나와 있는 전달 규정은 통계 등록을 위한 첫 납입금이 원칙적으로 납세 통계를 위한 납입금이 가불되어야만 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1, 2 단락에 언급되어 있는 추가 납입금은 납세 통계를 위한 납입금과 공동으로 전달된다. 두 가지 경우에는 통계 등록 용도로만 사용되는 자립적인 데이터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 전달 꾸러미를 통해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 (3) 현행 법제에 따라 1단락에 의거한 납입금은 연간 매출세액 통계에 상응하여 전달되며, 2단락에 의거한 납입금 즉, 제조업체와 자영업자의 수입은 임금, 소득, 법인체 납세 통계 용도로 공급되도록 적합하게 3년마다 전달된다.

3장

- (1) 이러한 규정을 통해 연방 노동청의 납입금 전달이 통계 등록 시에 규정된다.

연방 노동청 데이터의 특별한 의미는 기업 별로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근로자 수는 -매출 이외에도- 경제적인 단일성을 위해 중요한 규모 지수이다. 우선 중요한 규모 지수는 기본 총체성을 분석하고 표본 테스트 징수를 위한 계층을 제한하는데 필요하다.

연방 노동청은 기업체 (이는 2186/93번 측면에서 장소적인 단일성이다)를 제외한 근로자를 등재한다. 기업에 속하는 단일 기업의 일원은 연방청의

데이터에 총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또한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만이 등재된다,

순수한 소유자 기업 즉 자영제조업자와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가 없는 근로자들은 연방정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5

- (2) 통계청 등록은 부분적으로 연방노동청의 운영 데이터보다 더 실질적일 수 있다. 이는 또한 현행 통계징수를 근거로 하여 실행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등록된 이러한 납입금이 연방 노동청에 의해 전달된 납입금과 다른 경우에는, 2단락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청에 기업의 개별경제분야에 관하여 통계 등록을 토대로 매 해 전달한다. 통계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본법으로 인해 이러한 상이한 납입금은 연방 노동청의 통계 용도를 제외하고 전달될 수 있다. 수신처가 다를 경우, 상이함을 입증하는 기호를 알려준다. 게다가 그 때 그 때마다 부가의 용도로 기업번호가 같이 전달된다.

이러한 전달을 통하여 연방 노동청과 통계청의 노동시장통계들이 “개별경제 분야”라는 골격기준을 참고로 하여 합의될 수 있다. 1990년 10월 9일자, 협의 회의 조례 (EWG) 3항 2단락 3037/90번에 의거하여 1993년 3월 24일 (ABl. EG Nr. L 83 S.1) 조례 (EWG) 761/93번을 통해 변경된 개별경제분야의 통계 분류법이 유럽 공동체 (ABl. EG Nr. L 293 S.1)에서 각 통계마다 활용가능하다. 이는 또한 연방노동청에 의해 마련된 노동시장통계에도 유효하다. 노동 시장통계와 연방통계에 관한 기업의 단일적인 개별경제분야는 NACE Rev.1의 도입으로 인해 추구되는 공동체의 조화 즉 완벽한 비교가능성이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 조직된 통계 결과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기업의 단일적인 개별경제분야 시스템 상 부가를 위해서 가능한 한 개별경제 분야에서 NACE Rev.1에 의해 도출된 국가 등급의 하위 등급인 1993 발간 (WZ 93)이 표준적이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전달은 하는 기업이 고지의무에 의해 부담을 덜고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것에 기여한다.

4장

4장은 상공회의소의 조합원 데이터 출처의 납입금을 통계청에 전달하는 것을 규정한다. 최근에 1994년 11월 23일자 법안의 4항을 통하여 변경된 연방 법률 공보 III. 701-1번이 들어있는 공표된 초안을 통해 상공회의소 법안의 이전 규정에 관한 법조항 2장에 의거하여, 상공회의소 구성원은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에서 제조업 정착이나 사업장이나 판매지역을 관리하는 자연인, 상사회사, 다른 법인이 아닌 절대다수인사와 사법과 공법의 법인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세하게 중앙 통제의 위치에서 기계에 의해 집행된다.

연방 노동청의 운용 데이터와 상이한 점은 상공회의소 구성원의 데이터가 사회보장보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없이도 경제 단일성에 관한 납입금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업 (본점)뿐 아니라 장소적 단일성 (제조업 정착, 사업장이나 판매소)과 기업에 관한 장소적 단일성의 일원에 관한 납입금이 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 구성원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소속기업을 부가시킨다. 조합원 보험금 산정은 재무청과 상공회의소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소속기업의 납세번호 역시 지정한다. 납세번호가 재무청의 데이터와 비교된 것을 토대로 저장되는 반면에, 신원확인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납입금 외에도 상공회의소를 통한 납세번호의 전달은 직접적으로 상공회의소 데이터와 통계청 등록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16

5장

5장은 자영 수공업자 (수공업자 명부)와 수공업과 유사한 업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수공업 회의소에 의해 집행된 목록에 나와 있는 납입금을 통계청에 전달하는 것을 규정한다. 수공업회의소는 원칙적으로 기업 (제조업 본점)을 위한 정보를 처리한다. 기업들 역시 사회보장납부 의무가 있는 근로자 없이 등록된다.

기업이 수공업자 명부에 등록된다거나 수공업과 유사한 업체를 경영하는 사실은 통계청 등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현재 A 시설의 127개 제조업 분야 내지는 B 시설의 50개 제조업 분야에 따라 수공업 통계를 참고로 하여 부가적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수공업자 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수공업 고지 의무의 틀 안에서

등급을 제한하는 표본 테스트의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수공업규정의 7장과 119장에 의거한 등록의 근거가 되는 납입금은 자영 수공업자와 수공업 연대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구성원 보험금 산정은 재무청과 상공회의소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소속 기업의 납세번호 역시 지정한다. 납세번호가 재무청의 데이터와 비교된 것을 토대로 저장되는 반면에, 신원확인과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납입금 외에도 상공회의소를 통한 납세번호의 전달은 직접적으로 상공회의소 데이터와 통계청 등록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6장

연방 통계는 통계등록의 구축과 집행에 지속적으로 “미개척분야”에 발을 들여 놓는다. 4장과 5장에서 언급된 회의소에 의해 인도되는 이름, 주소, 법 형식과 활동 형태에 관한 납입금은 통계 등록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규정은 미리 준비해둔다. 이러한 것이 통계 등록의 구축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은 그 밖의 회의소와 직업연맹에 의해 그러한 납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7장

규정은 통계청이 신원일치 즉 이름, 법 형식, 주소와 상용 데이터에 기호를 조회하는 것에 관한 통계 등록 상 등재되고 집행되는 단일성을 규정한다. 한편으로 주소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용 데이터의 단일 데이터문을 완전히 부가시키고 의혹 없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용 데이터의 데이터문을 통계청에 부가시키는 것이 명백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비용과 채무를 이유로 하여 소비하게 된다. 게다가 개별경제 분야에 부가되는 것과 단일성 간의 연관성은 테스트되어야한다. 완벽성과 그로 인한 통계 등록의 제 기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고지의무로서 징수가 집행되어야 한다.

재 문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계가 해독할 수 있는 등록양식의 도움으로 수신처에 관해 통계청에 등재되어 있는 납입금에 해당한다.

앞으로 등록 양식은 납세번호, 기업체 번호를 연방 노동청의 운용 데이터, 상공 회의소의 조합원 번호와 특정한 경우에는 수공업회의소의 조합원 번호에 등재하는 것에 관해 기계가 해독할 수 있는 영역을 포괄한다. 등록 양식은 통계등록에 등재되는 단위로 발송된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번호를 등재하고 기입된 등록 양식을 통계청에 반송하는 납입금을 테스트하는 것이 요구된다.

8장

통계 등록의 활용가능성은 대부분의 토대에서 (A단락 I) 이미 기술되었다.

이러한 것이 등록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다. 8장에서는 2168/93번이 언급되고 부분적으로 행정 데이터나 총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인계될 수 있는 통계 등록 상의 납입금에 대한 몇몇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이 규정된다. 공동 목적은 통계 징수와 단일 정보의 경제 단일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 (1) 경제나 환경 통계에 관한 일련의 연방주의 법률규정은 예를 들면 매출, 근로자 수와 같은 통계 등록에 나와 있는 납입금에 상응하는 몇몇 특징들을 배열하게 되어있다. 여러 특징들이 통계 등록에 상응하는 납입금으로 이러한 징수행위를 대체하는 반면에, 1단락은 통계청이 이러한 특징들을 미리 고지하는 징수행위에 의해 예측하는 것을 허용한다. 언급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고지 의무자 예를 들어 기업의 소유주나 사장은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자사의 매출과 근로자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의 교부를 자유롭게 하거나 내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
- (2) 통계 등록에 나와 있는 납입금의 전달과 관련하여 여기 규정된 경우에, 통계청은 연방주의 법 규정을 통해 지시되는 경제, 환경 통계를 통계 등록 출처의 몇몇 정보들에 보완할 수 있다. 통계 등록에 나와 있는 활용 가능한 납입금은 1번부터 12번까지 헤아려진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 또한 고지의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다.
- (3) 나열된 경제, 환경통계의 정보고지 의무자에게 통계 등록상의 납입금 활용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3단락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교육을 규정한다.

**Begründung zum Gesetz zur Neuregelung der Energiestatistik und zur Änderung des
Statistikregistergesetzes und des Umsatzsteuergesetzes vom 26. Juli 2002
(BT-Drucks. Nr. 14/9080 vom 15. Mai 2002)**

이를 통해 조세법과 기업군의 측면에서 기구체의 관련성에 관한 테스트 전제 조건 또한 경쟁법의 측면에서 창출된다. 게다가 통계등록법과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세법은 에너지 통계 규정에 관한 입법 과정의 틀 안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독자기업이 기구체로서 실질적인 관계의 총 그림에 따라 재정, 경제, 기구체적으로 기구 운영자의 기업에 기구체의 형태로 조직된 경우에, 연방 통계청의 측면에서 기업을 제시하는 법인은 매출세법상 독자기업으로서 고찰되지 않는다. 매출세법상 기구체는 총체적으로 기구 운영자와 소속된 기구체로부터 생긴 단일 기업을 형성한다. 기구체에 속하는 기구협회에 대한 납입금은 이제까지 재무청에 의해 인도되지 않았다. 통계 등록법 2장 1단락에 의거해 전달하는 경우에 기구 운영자만이 알려진 데로 특별히 표시된다. 기구 협회의 납세 가능한 매출은 소속된 기구 운영자의 경우에 입증된다. 주어진 경우에 매출이 기구협회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구 운영자의 개별경제분야 내 총 납세 의무가 있는 매출을 입증시켰고, 기구 운영자의 지역에 부가된다.

이로서 연방주의 재무청에 의해 전달된 통계 등록 상의 매출세 의무적인 기업에 관한 납입금의 사용은 객관적이고 지역적인 깊이에 손해를 입게 한다.

통계 등록에 있는 3장 1단락에 의거하여 도입되는 2a장은 기구협회와 기구체에 관한 연방 재정청에 언급된 납입금의 전달을 규정한다. 이러한 납입금은 연방 재정청의 경우에 개별적으로만 제공된다. 2a장에 언급된 납입금의 전달을 통하여 통계 등록청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들은 기구체와 그로 인한 경제 활동에 관해 가공될 수 있다. 기구체의 구성에 관한 경제 설문조사는 이제까지 감소했다. 해당 기업은 통계 고지의무에 의하여 부담이 줄어든다.

통계청에서 기구체 납입금의 가공비용은 기업의 경우 탈락되는 설문조사 비용을 통해 보상된다.

2a장에 의거한 납입금은 전달되는 납입금의 분할을 위한 추가 노동과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방 통계청에 전달되어야 한다. 연방 통계청은 그 때 그 때 마다 연방 주 통계청 관할 구역에 기구체와 기구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발췌 인쇄본:

2005년 6월 9일자 통계 등록법과 기타 통계법 변경에 관한 법안 초안 토대
(2004년 11월 5일자 바이에른 방송국 인쇄판 878/04번)

C. 특수 부분

1항

1번 (5장)

동업조합 법 개정을 근거로 하여 동업조합 등급은 더 이상 수공업과 이와 유사한 제조업을 더 이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의무적인 수공업과 허용이 자유로운 수공업과 동업조합과 유사한 제조업을 구분한다.

2번 (8장 2단락)

통계 등록법 8장 2단락의 개정판은 연방 통계법 13a장의 개정판에 관해 통계 등록에 등재된 납입금을 경제 및 환경 통계, 행정데이터 활용법에 의거한 데이터, 일반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법적 토대를 보완해 준다.

통계 등록법 8장의 이제까지의 작성된 텍스트는 열거하듯이 제시되는 특정한 등록 납입금을 경제, 환경 통계 출처의 납입금과 연결시키는 것이 제한되었다. 개정판을 통해 이렇게 열거하듯이 제시된 데이터 뿐 아니라 경제, 환경 통계 출처의 납입금과 통계 등록의 모든 데이터들이 결합되는 것이다. 게다가 통계 등록 데이터들은 행정 데이터 활용법에 의거한 데이터와 일반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미 통계청에 먼저 등재된 데이터들이 활용되는 반면에, 새 규정의 목적은 새로운 통계 징수를 예방하는 것이다.

경제, 환경 통계, 통계청 등록 출처의 데이터를 또한 행정 데이터 활용법에

의거하여 제한시키는 것을 통하여 기업과 관련 있는 납입금만이 연결되는 것이 보장된다. 정보의 자결권에 관한 법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격 프로필의 제출을 통하여 해명된다.

3번 (9장)

독점적인 통계 용도로 1987년도 사업장 조사 출처의 납입금을 지역통계청에 전달하고자, 통계 등록법 9장에 의거한 전달규정은 연방 주 통계청에 규정을 허용하는 1987년도 인구조사법 14장 1단락을 실마리로 삼는다.

개정된 사업장 조사의 누락에 따라 자치단체에는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는 따라서 이전에 사업장 조사에서 획득된 최소한 정보 일부라도 자치단체에게 사회구조관찰을 위한 익명의 개별데이터로서 충족되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납입금은 자치단체가 통계를 요구하는 담당 관할에 전달된다. 전달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은 요구하는 담당 관할에 있다. 통계 등록으로 인하여 납입금의 전달을 통해 최소 행정 구역과 행정 연합체에 발생하는 비용은 차감될 수 있다.

발췌 인쇄본:

2006년 11월 10일자 전자 상거래 등록, 조합 등록,
기업 등록에 관한 법안 초안 토대
(2005년 12월 30일자 바이에른 방송국 인쇄판 942/05번)

후속 인쇄본

21a

인쇄물 942/05

12항 (기타 연방법 변경사항)

(1) 통계 등록법 변경사항

연방 주와 지역 통계청은 1993년 7월 22일자 협위회의 통계 용도의 기업 등록제 구축의 공동체 내부적인 조장에 관한 2186/93/EWG 법령에 의거하여 통계 등록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등록의 품질은 특히나 통계 등록의 의무가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에게 있어 근간을 이루는 납입금이 본래대로 집행되는 상거래 등록 절차가 장차 강화되어 통계 등록을 장려하는 것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상거래 등록 절차가 서면형태에서 전자 등록제로 데이터 전송이 대단히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상거래 등록에 저장된 데이터 다수로 인해 그렇지만 포괄적인 전송이 엄청난 비용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송의무를 규모를 한시적으로 소위 상거래 등록의 “지수데이터”로 제한시키는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수데이터는 전자 등록 시에 특별히 검색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게 데이터 현황에서 필터링 될 필요가 없다. 통계 등록 용도로 흥미로울 수 있는 기타 데이터를 다루는 전송의무의 확대는 이후에 새로 테스트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통계청은 이러한 데이터를 각 각 지수 데이터를 토대로 온라인 열람을 통해 상거래 등록에 산출해 낼 수 있다.

발취 인쇄본:

전자 상거래 등록, 조합 등록, 기업 등록에 관한 법안
(EHUG)

2006년 11월 10일자

1항

상거래법전 변경 내용

연방 법률공보 III 파트, 분류번호 4100-1에 공표된 초안이 담긴 상거래법전은 최종적으로 2006년 10월 31일자 법령 99호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 8장-12장까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다.

8b장

기업등록

(1) 기업등록은 규정을 조건으로 9a장 1단락에 의거하여 연방법무부에 의해 전자 등록이 실행되었다.

(2) 기업등록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해 접근 가능하다.

1. 상거래 등록의 등재, 공지와 상거래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2. 조합 등록 등재, 공지와 조합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3. 파트너쉽 등록 등재, 공지와 파트너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4. 325장과 339장에 따른 산정 토대와 관련 공지
5. 연방정부의 전자관보에 공동 공지
6. 주식법 127a에 의거하여 주주포럼에 공표된 등재
7. 유가증권거래법에 의거한 기업의 연방정부 전자관보 차원의 공표, 유가증권 취득과 인수법에 의거한 입찰자, 공동체, 이사진, 감찰기구단의 연방정부 전자 관보 차원의 공표와 주식상장법령에 의거한 연방정부 전자관보 차원의 공표

8. 투자법과 투자세법에 의거한 국내 투자회사와 투자주식회사 연방정부 전자관보 차원의 공지와 공표
9. 공표가 기업등록 7번에 관해 설정되지 않는 한, 유가증권거래법 15, 25, 26장에 의거한 공표와 61, 66장에 의거한 주식상장법령 공표
10. 공표가 기업등록 7, 9번에 관해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 재정 서비스 부서에 자금시장법적인 공표에 관해 공지
11. 지급불능 규정 파트 9에 따른 소송절차를 제외한 지급불능 규정 9장에 의거한 지급불능 재판 공지

(3) 기업 등록에 등재 준비하는 것은 기업 등록에 전달되어야 한다.

1. 연방정부 전자관보의 운영자를 통한 2단락 4-8번에 따른 데이터
2. 공표의무자나 공표의무자에 의해 신뢰받은 제 3자의 공표를 통한 2단락 9-10 번에 따른 데이터

기업 등록의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하여 접근 개시를 위하여 원본데이터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법무행정은 기업 등록의 용도로 2단락 1-3번, 11번에 의거한 데이터를 전달한다.

(4) 기업 등록의 실행은 인쇄물의 분배와 기업 등록에 저장된 자료에서 회계 보고를 참고로 한 9장 3, 4단락에 상응한 공증을 2단락 4번의 측면에서 포함한다. 동시에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신청이 2단락 4번의 측면에서 관련 있는 한, 9장 2단락에 의거해 상거래 등록에 제출된 문건과 관련된 전자 전달방식에 유효하다. 9장 3단락은 이에 상응하여 유효하다.

< 붙임-5 > 한독양자협력회의 관련 사진

□ 독일측 공식리셉션



□ 한국청장 초청 오찬후



< 부임-6 > 독일이 보낸 Document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June 27, 2008

In the meeting of th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Mr. Dae-Ki Kim, and the President of the German Federal Statistical Office, Mr. Walter Radermacher, the following has been decided referring to the activities of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Offices in the year 2009.

- ◆ A comparison of social statistical indicators between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elaborated. The concept of this statistical comparison should be elaborated in a meeting of German statistical experts and their KNSO counterparts in 2009 in Daejeon. The activity should result in a common publication to be made available to the interested public via the Internet and/or in a printed format.
- ◆ It was agreed that in 2009 a concept for the "Third NBS/KNSO/Destatis Joint Statistical Seminar" in 2010 to be host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cause of cost reasons (travel costs on the German side) it was recommended to organize the meeting of the responsible staff of the three Offices in combination with the visit of the German delegation mentioned above in Seoul/Daejeon or in Beijing. Ms Ahn Jung-Im (KNSO) and Mr Stoertzbach (Destatis) will contact Mr. Du Weiqun (NBS) in this matter.
- ◆ Commissioner Dae-Ki Kim supported the initiative of Eurostat and Destatis to invite Mr Jeon Baekgeun, Director of the Statistical Training Institute of the KNSO, to participate as speaker in the Special Contributed Topic Meeting "From Statistical Training to Learning and Development" at the 5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ISI) in August 2009 in Durban, South Africa.